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法學碩士 學位論文

유엔해양法協約상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011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海事法學科 海事法專攻

裴 修 卿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국제해양분쟁의 국제법적 개념 .....	4
제1절 국제해양분쟁의 의의 .....	4
제2절 국제해양분쟁의 성질 .....	5
1. 해양관할수역 관련 분쟁 .....	5
2. 국가관할 수역내 활동 관련 분쟁 .....	9
3. 국가관할권 이원의 활동 관련 분쟁 .....	13
제3장 국제해양분쟁의 일반적 해결방안 .....	15
제1절 정치적 해결방안 .....	15
1. 교섭 .....	15
2. 중개 .....	25
3. 사실조사 .....	30
4. 조정 .....	35
5. 국제조직을 통한 해결방법 .....	38
제2절 사법적 해결방안 .....	45
1. 중재재판 .....	45
2. 상설중재법원 .....	50

3. 국제사법재판소 .....	51
4. 지역적 사법재판 .....	60
<b>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방안 .....</b>	<b>61</b>
<b>제1절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및 해결구조 .....</b>	<b>61</b>
1.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	61
2.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구조 .....	65
<b>제2절 ITLOS의 구성과 관할권 .....</b>	<b>74</b>
1. ITLOS의 구성 .....	74
2. ITLOS의 관할권 .....	88
<b>제5장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및 개선방안 .....</b>	<b>85</b>
<b>제1절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b>	<b>85</b>
1. Camouco호 사건 .....	88
2. Monte-Confurco호 사건 .....	98
3. Grand Prince호 사건 .....	99
4. Volga호 사건 .....	99
5. Juno Trader호 사건 .....	99
6. Hoshinmaru호 사건 .....	99
<b>제2절 향후 개선방안 .....</b>	<b>100</b>
<b>제6장 요약 및 결론 .....</b>	<b>103</b>
<b>참고문헌 .....</b>	<b>109</b>

# A Study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Bae, Su-Kyoung*

*Department of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In recent times, due to rapid development of maritime science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ly independent countries, the tensions among countries have been intensified in using and controlling many types of the sea. According to complicated maritime circumstances being surround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system,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o the ocean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need for a new revision on the existing maritime system is needed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maritime are trying very hard to analyze and authorize the matters internationally that could affect maritime policies, industries and economic structures. and which are an effort for reflecting the benefit of nation in international agreements involving in the ocean.

Korea is also observing the settled conventions in order to be adapted for rapidly changing maritime system and to improve domestic law system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maritime societ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is a comprehensive and overall on the sea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orders at the sea which is full of potentially occurred disputes. Especially the system for settling disput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being recognized as a unique system for enhancing the valu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a new law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would also means that this could raise many disputes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re are chances that the sharp conflicts among the nations can be grown to a great extent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were settled through both general way and unique way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olitically and judicially. Especially, it is also focused on the role of ITLOS and unique analyzing method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Firstly, disputes on the Law of the Sea indicate that they could be caused by both the interpretation and the usage of the sea. they also indicate the disputes regarding on water jurisdictions and waters away from jurisdictions.

With regard to the methods for resolving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cases, there are both ways to handle them in politically and judicially. Considering varieties and specialti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vides with special process and system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s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ar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and the Special Court of Arbitration. Especially

ITLOS is mainly dealing with the maritime related conflicts among the nations

After the research on th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and jurisdiction of ITLOS, I found out that the guidelines in choosing the Court-case to settle the dispute by force are ambiguous. Also, the effort for resolving budget management problems and effort for taking transparency in organizing trial members of ITLOS are apparently needed.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various dispute cases to ITLOS which is neither based on a few fields, nor based on only small scope of judgem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는 지금 해양에서의 힘의 확장이 국가력의 뒷받침이라는 인식으로 해양을 국가관할권 확장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영해주권의 수호와 배타적 경제수역내 자국의 선박의 항해 및 안전조업의 확보를 토대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해양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신생독립국의 등장으로 인해 해양의 이용과 규제 형태에 대한 국가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해양질서를 둘러싼 해양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문제와 관련된 국제분쟁이 증가하게 되자 기존 해양질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선진국은 새로운 해양의 이용과 지배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다양한 법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양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공인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양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해양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확립된 국제해양협약을 준수하고 향후 국제해양법 질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여야 하고 나아가 관련 국내여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법 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해양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은 잠재적인 분쟁으로 가득한 해양에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1년간의 열띤 협상과 논의를 거쳐 총307개의 조문과 1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법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동협약의 의미를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쳐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



며 모든 개개의 조문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국가 및 그들 대표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독특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양법협약 속에 새로운 범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은 해양법회의에서 자국의 이해 때문에 상당히 대립했지만 최종적으로 미묘한 타협과 조정에 의해 유엔해양법협약을 완성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방대한 규정과 내용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첨예한 국가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국제해양분쟁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왔는지 그러한 일반적 해결방식과 다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방법의 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독특한 해결방법 중에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과 최근 분쟁해결사례 분석을 통해 보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해양분쟁의 일반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의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ITLOS의 구성과 관할권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제해양분쟁의 국제법적 개념과 성질을 국가관할권 관련 분쟁과 국가활동관련 분쟁으로 유형별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제해양분쟁의 일반적 해결방안을 정치적 해결방법인 직접교섭과 중개, 사실조사, 조정,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방법과 사법적 해결방법인 중

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사법적 해결방법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상상 분쟁해결제도의 연혁과 해결구조를 분석해 보고 가장 특징적이며 중심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구성과 관할권을 고찰한 후

제5장에서는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와 그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제6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제네바 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등 해양법관계조약과 이와 관련된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해양분쟁해결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와 국가간의 선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 제2장 국제해양분쟁의 국제법적 개념

### 제1절 국제해양분쟁의 의의

국제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differences of opinions)을 말한다. 분쟁이란 당사국들간에 법 또는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혹은 법적 견해나 이해관계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였으나, 타국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 국제판례에 의하면, 타방이 취한 태도가 자기의 견해에 반한 것임을 일방의 정부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실질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표명된 경우에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관한 문제이다. 즉,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관적 태도나 입장에 의해 분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라고 판시하였다.

종래 학설상 국제분쟁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재판에 친한 법률적 분쟁과 그렇지 않은 비법률적 분쟁 또는 정치적 분쟁으로 2분하여 왔다. 실제로 개별조약에서 재판의무가 설정되는 분쟁은 법률적 분쟁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

기 때문에 학설은 그것을 근거로 분류를 전개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재판소에 부탁된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부탁된 분쟁이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이나 수리가능성을 부정하는데는 소극적이다(1984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관할권과 수리가능성). 이러한 재판소의 실천상 종래부터 논의 되어온 분쟁분류론은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 제2절 국제해양분쟁의 성질

해양법상의 분쟁은 해양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하여 또는 이를 규율하는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하며 넓게는 두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에 관련된 분쟁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 관련된 국가활동에 관련된 분쟁이다.<sup>1)</sup>

내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영해, 접속수역, 국제해협, 군도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위치하는 도서에 관한 법제도들은 이들 해양관할수역의 범위, 경계획정 및 이들 수역내의 국가내 개인들의 활동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1. 해양관할수역 관련 분쟁

먼저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서 모든 국가관할수역이 확정되는 기준선 즉 영해기선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하는데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

1) Yogesh K. Tyagi, "The System of Disputes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An Overview", The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No.2, (1985), pp.193-196.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보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서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적해도상에 표시된 해안저조선을 통상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안선이 깊이 굴곡하고 만입한 지역 또는 바로 인근의 해안을 따라 일련의 도서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가운데에 특히 직선기선의 설정과 관련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선기선의 설정이 어렵고 또한 중요한 이유는 각국의 해안선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심하거나, 섬이 존재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라는 데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내 해역은 내수제도에 종속될 수 있도록 육지영역에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사실 및 중요성이 장기간의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관련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국의 직선기선제도가 타국의 영해를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 영해기선의 내측수역은 내수로서 법적으로는 영토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내수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설정하려는 데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국에 속한 만으로서 만의 자연적 입구의 저조지점 사이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조지점내에 제한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안국들은 만의 넓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타국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해양의 범위가 축소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자의적으로 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만’ 또는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요건의 적용을 받

2) 유엔해양법 협약 제7조 3,4,5,6항.

지 않도록 함으로써,<sup>3)</sup> 이를 주장하는 연안국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들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경계획정의 필요는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데 영해는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비교적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서로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양국 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자국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상의 최단거리 지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지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을 넘어서 영해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역사적 권원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과 상이한 방법으로 두 국가의 영해를 확장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도 같은 규정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한편,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설정될 수 있으며, 그 수역 내에 부족하고 있는 중요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을 갖는 것이어서, 각국이 이러한 수역의 범위 및 그 경계획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이 대륙붕의 경계획정원칙으로 ‘합의의 원칙’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등거리선 내지 중간선의 원칙’을 규정한 이후 대륙붕 외에도 국가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대항 또는 인접하는 국가 간에 양자의 경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포괄적인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각국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형평한 경계획정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과 등거리선 내지 중간선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경계획정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명시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의 원칙’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

---

3) 상기 협약 제10조 6항.

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 규정된 해양분쟁 해결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당사국들이 해양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동해 또는 황해처럼 지리적으로 좁은 해양수역에서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잠재적인 분쟁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곤란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사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엔해양법협약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sup>4)</sup>

도서 및 군도국가에 관한 분쟁으로서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그 자체로서는 해양법상의 분쟁보다는 영토분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도서는 해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의 해양관할 수역의 보유 및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양법 질서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도 널리 해양법상의 분쟁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sup>5)</sup>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에 의하면 도서란 ‘수면으로 둘러 쌓이고 만조시 수면 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도서는 그 영유권이 영해기선의 획정을 위한 기점은 물론,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도서를 영유하고 있는 연안국의 관할권의 범위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도서의 개념규정 및 특정도서의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는 물론 특정 도서의 영유권에 관련하여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9조 제8항에 의하면 도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요하므로 인공도서나 등대, 수로표지등의 시설 및 구조물은 도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 자체의 영해 및 기타 관할 수역을 갖지 못함은 물론 영해,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등 해양관할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영

4) 김영구,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20년의 평가와 전망’, 유엔해양법협약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2002), 대한국제법학회, 11쪽.

5) 김영구, 앞의 논문, 30쪽.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 제3항에서는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도서의 법적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거주의 지속’ 및 ‘독립적 경제생활의 영위’등의 해석에 있어서는 극히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어서 도서 영유국이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가 여러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가 군도국가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46조에 의하면 군도국가는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군도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를 의미하고 여기에 기타의 섬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고유의 지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실체를 형성하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온 도서의 약간을 포함한 도서군, 상호 연결된 수역 및 기타 자연지형’을 의미한다.

## 2. 국가관할 수역 내 활동 관련 분쟁

국가관할 수역내의 활동에 기인하는 분쟁을 들 수 있다. 국가관할수역 내에서 국가들이 행할 수 있는 활동들은 매우 다양한 바, 국가의 상업적, 비상업적 활동들 모두가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연안국은 물론 내륙국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내륙국들은 해양이용을 위하여 연안국의 내수 및 기타 관할 수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내륙국이 바다에 진출하기 위하여 통과해야하는 국가를 통과국이라고 하고 연안국 이외에 여러 다른 내륙국들을 통과해야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모든 국가가 통과국에 포함된다. 그리고 통과교통이란 내륙국에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하여 통과국의 영역을 거쳐가는 사람, 상품, 운송수단의 통과를 의미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륙국은 바다의 출입을 위하여 통과권을 가지나 그 권한 행사의 조건이나 형태는 통과국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과국



은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선박의 국가관할수역 내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군함의 활동이다. 군함은 일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임명되고 또한 그 성명이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있으며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으로서 공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등 관할수역 내에서도 불가침의 특권과 연안국 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한다.<sup>6)</sup> 이는 군함이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국가대표적 성격과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군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국가관할권 내 수역에서의 군함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해협에서의 잠수함의 잠항통항 문제이다. 해양강대국들은 협약상의 '통과통항' 제도를 연안국의 영해로 구성된 국제해협에서 잠항통항을 포함한 자유항행이 군함을 포함한 타국 선박들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특히 이 통과통항제도가 이미 일반국제관습법의 내용으로 확립되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및 398조의 규정에는 잠항통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무해통항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떠한 통항이 무해한 것인지는 결국 연안국의 폭넓은 재량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국의 권익을 위하여 관할수역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연안국과 보다 자유롭게 자국의 선박을 통항시키고자 하는 국가들 간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군도수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군도직선기선으로 이루어진 수역의 전체로 이루어지며, 군도국가의 주권을 이 군도수역의 전체 즉 수면, 해저 및 하층토는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군도수역은 대체로 매우 넓은 수역인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수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외국이 향유하고 있었던 제반활동을 위한 권리 특히, 어업활동과 선박으

---

6)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

항해자유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군도국가는 군도수역 내에서 기존협정에 의하여 누리고 있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인접한 국가의 전통적 어업권과 기타 합법적인 활동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선기선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이 그 내측에 포함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해에서와 같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군도수역에 있어서는 무해통항권과 유사한 군도항로통항권(right of archipelagic sea lane passage)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도항로통항권이라 함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두 부분 사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목적으로 군도수역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항해하거나 또는 그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인 통항로로 이용되는 해협은 경우도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영해에 있어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의 유무와 관련하여 국제해협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왔다. 과거 국제해협에 있어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Corfu Channel 사건을 계기로 확인되었지만, 이후 각국이 점차 영해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통항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군함의 영해 내지 해협통과문제가 계속 부각되어 왔다.<sup>7)</sup>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국제해협에 있어서 새로운 통과통항제도를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역의 경우에 보다 자유로운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통과통항권이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연결하는 해협에 있어서 이러한 해협을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만으로써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는 국제해협의 범위는 특정되어 있으며 기타 유형의 국제해협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과연 어떠한 해협이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해협인가에 대한 협약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국간에 분쟁이 가능성이 많다.

---

7) 김영구,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20년의 평가와 전망', 유엔해양법협약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2002), 대한국제법학회, 36쪽.

또한 무해통항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통과통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연안국과 선박의 기국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타국의 권리와 자유가 본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본 협약 제5장에 확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르는 영해이원에 인접한 수역’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동 협약 제57조에서는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이 수역내의 해저,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은 천연장원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동 수역의 경제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향유한다. 그리고 연안국은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는 영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과는 달리 일정한 제약을 받는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타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협약의 다른 규정들과 양립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과 이에 대한 외국의 반론 사이에 충돌 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sup>9)</sup>

대륙붕 또한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로써 그 구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배타적관할권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9) 김영구,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20년의 평가와 전망’, 유엔해양법협약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2002), 대한국제법학회, 37쪽.

지로 대륙붕상의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건설, 운용, 사용을 위한 허가,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제반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상 시험을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수역 또는 동 수역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항행 및 이 협약에 규정된 타국의 다른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부당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대륙붕을 설정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대륙붕의 탐사,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관할권내지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과 그 수역을 이용하려는 외국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국가관할수역 내의 활동에 기인하는 국제해양분쟁과 관련하여 특히 오늘날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은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이다. 영해와 국제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무해통항권 및 통과통항권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이러한 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영해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무해통항 및 국제해협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통과통항의 범위에는 수역의 군사적 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 3. 국가관할권 이원의 활동 관련 분쟁

전통적으로 공해는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 즉 국가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모든 수역이라고 정의되어 왔다.<sup>11)</sup>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공해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수 또는 군도수역이 아닌 바다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7장(공해)의 규정은 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10)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78조, 80조, 81조.

11) 공해에 관한 협약 제1조.

공해는 어떤 특정 국가가 이 수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공해는 연안국 또는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해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특히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설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도서 기타 건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그리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심해저제도가 마련되면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공해제도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원칙과 규율 하에서 관리 및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에 의하면 “심해저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 및 그 지하를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제외한 공해수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가 법적 의미의 심해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심해저제도의 목표는 그것이 인류공동유산이라는 전제하에 심해저에 부족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여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 규율 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해저는 해저 및 그 지하에 있는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만 한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상부수역 및 상공에 대하여는 여전히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부수역 및 상공에서의 각국의 항해의 자유, 비행의 자유,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심해저의 탐사, 개발활동에 관한 관할권 또는 활동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

12) 유엔해양법협약 제86조.

13)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1항.

## 제3장 국제해양분쟁의 일반적 해결방안

### 제1절 정치적 해결방안

#### 1. 交渉

UN총회는 1970년에 채택한 결의안에서 “그러므로 국가들은 교섭,사실조사, 중개,조정,중재재판,사법재판,지역적 기구나 협의에 의한 해결, 또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가들 사이의 국제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sup>14)</sup> UN헌장 제33조 제1항을 모델로 하여 동규정에 언급된 여러 가지 평화적 수단들은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맨 먼저 나와있는 ‘교섭’이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주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sup>15)</sup>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교섭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항상 맨 먼저 시도되는 수단은 교섭이고 또 이것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며 주된 이유는 국가들이 다른 수단들을 이용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교섭의 이점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교섭을 통한 분쟁의 해결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교섭은 그 수단들과 함께 사용되어 그것들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6)</sup> 따라서 어떤 형태로는 ‘교섭’은 국제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교섭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이상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교섭은 분쟁의 발생을 막는 기술이기도 하다 교섭의 이런 형태인

14)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G.A.Res 2625(XXV),October 24,1970.

15) C.M.H Waldock (ed), INTERNATION DISPUTES : THE LEGAL ASPECTS, London, 1972, Chapter 2A(H.Darwin).

16) 송영주,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쪽.

‘사전협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協議(consultation)

한 국가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계획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것을 예상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분쟁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전 협의를 통해 그 결정 및 계획을 수정하거나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면 충분하고, 그러한 수정은 그 결정 혹은 계획을 만든 국가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된 상대 국가가 이런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사전 협의’의 특별한 진가는 이것이 유용한 정보를 가장 적절한 시점-어떤 일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제공해 주는 것이다. 결정을 내리는 단계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그 후에 바꾸려고 하면, 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국가 이익을 희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sup>17)</sup>

협이는 개별사건에 대한 임시 조치로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관련 국가 상호간에 모두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 협의를 의무화하면 국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늦어지고, 그 의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국가가 취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협의가 강제적인 되도록 하려면,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및 의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에 상관없이 협의는 입법적 결정보다는 행정적 결정에 더욱 쉽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후자가 흔히 전자에 비해 절차가 덜 복잡하

17) 김재원 역,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pp.19-20 참조.

고 훨씬 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적 조치 또한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도 협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절차를 마련하면 유용할 것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그들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런 통일된 법규정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국의 규정이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정과 서로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경주할 가치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국가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입법과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외부의 참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입법과정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이런 참여를 받아들일 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운영된 예로 가스(gas) 수입에 관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가 있다.<sup>18)</sup>

협의를 각종 현안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협의, 즉 의무적인 것과 국가들이 선호하는 자발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전협의를 관한 포괄적인 책을 저술한 Kirgis 교수는 많은 국가들의 실제 관행을 조사한 후 “사전협의를 관한 법규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에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한해서 자주 발생하고 비교적 잘 정의된 분쟁 상황에만 사전협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국가들에게 사전 협의 절차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과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국가가 그 속성상 개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

18)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between Canada Bar Associations' Joint Working Group, 1979 참조.



## (2) 交渉의 特徵

국가간의 교섭은 '통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각국 외무부의 관리나 외교관을 통해서 교섭이 이루어지며, 매우 전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들 외교 담당자들이 관련부처의 관리들을 포함시킨 대표단을 이끌기도 한다. 외교채널을 통하지 않고, 각국의 소위 '소관부서'에 의해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 소관 부서의 관리들이 최고위급이 아닐 경우에는 이들이 합의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부의 더 고위급 관리들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여 계속적인 통제, 관리를 요하는 경우에 국가들은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다. 흔히 인접국가들 사이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경선의 확장이나 기타 공동의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보통 같은 수의 양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존속기간의 제한없이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떤 특정 문제만을 처리할 임무만을 부여받기도 한다.

정례화 된 교섭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돌파구를 찾는 방법으로 국민 수반들 사이의 정상회담 또는 외무부 장관들 사이의 회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회담을 통한 협상이 만능은 아니지만, 이것이 갖는 특별한 효력은 있다. 정상회담은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 원수들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합의도출의 동기를 제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정상외교는 통상적 교섭의 최정점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정상외교를 통해 발표된 성과라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전일 뿐이고 이미 실무진들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일반적인 교섭과는 달리, 정상회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실현되기 어려운 기대감도 자아낸다. 이런 측면은 정상회담이 갖는 약점이다. 그러므로 정상회담에 거는 지나친 기대와 환상은 제거되어야 한다. 정상회담도 통상적인 외교채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외교의 예에서 잘 드러난 것과 같은 공개적 교섭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도 나타난다. 유엔총회나 이와 유사한 국제회의에서 국가들은 국제적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외교적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자국의 어려운 처지를 세계에 알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데 분명히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을 택한 경우의 단점도 있다. 이 경우 자신들의 입장이나 행동방침을 너무 분명하게 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후에 판명되어도 태도를 바꾸거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국가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극적인 대결보다는 국제기구들을 통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접촉을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는 특정 종류의 분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전통적인 교섭의 대용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제재판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재판소는 먼저 자신들에 상응하는 정치적 국제기구들과 사법기관인 자신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交渉의 조건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이해가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에 한쪽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하는 해결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분쟁의 실체적 측면에 관해 교섭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절차적인 해결방식에 관해 합의를 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방식은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논점들을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해결은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서 토레스 해협 해역경계 획정 문제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서 창출되었다.<sup>19)</sup> 그 분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19) H. Burmester, "The Torres Strait Treaty: Ocean boundary delimitation by agreement" (1982) 76 A J. I. L. 321.

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국은 교섭을 통해 해협 안에 위치한 섬 주민들의 이해, 그 섬들의 법적 지위, 해저 관할권, 어업관할권, 해양보존, 항행권을 각각 따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해양 경계획정이라는 단일한 의제로 교섭을 한 초반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자 대단히 기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식의 장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만약 분쟁을 이처럼 분리할 수 없다면, 한쪽에 내용상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절차적인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런 협의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교섭을 통해 성공적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드물지 않다. 이러한 규정을 “without prejudice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외교적 기술과 같이 이것도 양자 교섭은 물론 다자간 교섭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sup>20)</sup>

교섭 담당자들 사이에 이런 방식의 타협이 왜 인기가 높은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방식이 갖는 이점은 양립 불가능한 입장들 사이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봉착한 난관을 우회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난 쟁점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점이 갖는 비중이 크다면 잊혀지기 보다는 오히려 장래 분쟁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상태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의 합의는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의 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분쟁을 다루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되어야 한다. 교섭이 가능한 논쟁점들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더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다룰 때가 올 때까지 협상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분쟁의 성격상 혹은 당사자들이 한쪽의 손실에 근거하여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손해를 입게 되는 측이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쪽이 시간과 장소 등 교섭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도 긍

---

20) 송영주,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5쪽.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소위 ‘일괄타결’이라는 것이 있다. 이 방식은 두 분쟁을 하나로 묶어서 양측의 이해득실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당사자들이 교섭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일괄타결’ 방식은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와 같이 다자간 교섭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 해양법 회의에는 수많은 나라가 참여했고, 광범위한 의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논쟁점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sup>21)</sup>

국제 교섭의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또 하나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진 오늘날 외교의 대중적 차원이다. 교섭과정에서 여러 제안 및 반대제안들이 상호 교환되는 것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내의 이해관계 집단이 교섭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양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에 이르려는 진지한 의도없이 단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의심이 생기면, 상대방이 진지한 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단지 선전에 불과하다며 물리쳐 버릴 수도 있다. 언론보도에 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교섭의 진행상태를 알리는 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sup>22)</sup>

#### (4) 交渉과 裁判

교섭은 모든 국제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이용된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방법과 교섭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교섭과 재판의 관계를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섭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그 분쟁에 대한 통제력을 최대로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재판은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결정에 관한 한 당사자는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 이런 이

21) H. Caminos and M. R. Molitor,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ackage deal" (1985) 79 A. J. I. L. 871.

22) (1978) I. C. J. Rep. pp.39-40; D. H. N. Johnson, "The Intertional Court of Justice denies jurisdiction again" (1976-7) 7 Aust.Year book Int. L. 309 참조.

유로 어떤 시점에서 교섭이 재판의 단계로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이들 두 방법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둘의 관계가 특히 중요시되는 상황은 관련 국가들이 교섭의 실패를 재판 개시의 조건으로 한 경우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때에 비로소 법원이 그 분쟁에 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1)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교섭’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2)교섭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들이 제기된다.<sup>23)</sup> 분쟁의 당사자들이 해결방식 중에서 교섭을 우선시한 경우 단지 교섭을 거부하는 편법을 쓴다고 하여 중재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은 교섭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해결책을 내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원하지 않는 쪽은 교섭을 더 진행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반해 재판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쪽은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에 재판의 시작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제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문제된 의견의 불일치가 ‘국제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특히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재판이라는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아주 전문적인 방법이라서 모든 종류의 의견 불일치를 다루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의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는 법원은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해결에 바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구체화된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이 수행하는 기능의 하나는 분쟁의 초점을 잡아 재판에 회부해야 할 논점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섭은 재판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불일치가 법원이나 중재

---

23) South west Africa case; Border and Transborder Armed Acti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1988) I. C. J. Rep. p.69.

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섭은 분쟁해결을 시도할 때 이용되는 기본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우선권이나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느냐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일 뿐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적절한 지 여부에 관한 법원칙에 달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현명한 이유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복잡한 국제분쟁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5) 交渉의 한계

분쟁의 당사자들이 상대방과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는 경우에 교섭은 불가능하다. 심각한 분쟁의 경우에는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일도 있다. 이런 조치는 무력행사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취해진다. 물론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하여 그 국가들 사이의 모든 접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앞에서 본 것 같은 여러 가지 통상적인 외교적 접촉 방식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교섭의 이용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상대방이 분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거나, 또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공식적 접촉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대체적 방법들에 의해 상황을 타개해 갈 가능성은 있다.<sup>24)</sup>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그런 차이를 메워 줄 수 있는 공동관심사가 없다면 교섭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도 한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리 창의적인 시도를 한다해도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쟁의 실체적 측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음은 물론,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교섭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24) 송영주,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9쪽.

교섭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흔히 믿고 있다. 하지만 교섭이 분쟁해결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고 간주된 경우에 이런 믿음은 옳지 않다.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이미 합의되었다면, 그 중 일방이 합의된 절차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항상 교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어떤 형태이건 합의된 내용은 사건의 옳고 그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강약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섭에 임한다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 명백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분쟁이 새롭고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들이 교섭에 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sup>25)</sup>

국가는 물론 조약을 통해 그 자신에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법규범에 의해 그런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이웃 나라들 사이의 대륙붕 경계는 “형평의 원칙에 합치하는 합의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sup>26)</sup>

이 사건에서 국제재판소가 판시한 점은 한 나라 이상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 한 나라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질 수 없고, 반드시 관련 나라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섭에 임할 의무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요구되며, 이 때 교섭이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다른 상황에서는 분쟁 해결수단의 선택에 관해 “신속하게 상호간의 견해를 교환”하는 것과 같이 이 보다 가벼운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25) 송영주, 앞의 논문, 2002, 20쪽.

2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1969) I.C.J Rep. p3.

분명한 것은 어떤 조치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듯이, 분쟁을 반드시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없다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33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섭을 이용해야만 하는 의무가 특별히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교섭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견해 차이가 ‘분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외교적 접촉이 필요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교섭이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교섭은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효과적 혹은 부적절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분쟁해결에 진전을 주기 위해서 다음에 다룰 교섭 이외의 수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 2. 仲介

국제분쟁의 당사자들이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들이 뛰어넘지 못한 난국을 돌파하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제3자의 이런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다.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은 다른 대화 채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단순히 중단된 교섭을 다시 계속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 제3자가 하는 이런 역할을 ‘주선(good offices)’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제3자의 역할이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개입을 ‘조정(conciliation)’이라고 한다. 제3자의 역할이 ‘주선’과 ‘조정’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는 ‘仲介’이다.<sup>27)</sup>

27) F.S.Northedge and M.D.Donelan(eds).INTERNATIONAL DISPUTES:THE POLITICAL ASPECTS, London, 1971, Charter 13.



주선과 마찬가지로 중개도 교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개자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중개자에게는 자신이 판단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권한이 부여되거나 분쟁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길 기대하기도 한다. 중개자는 또한 당사자 일방의 제안을 해석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개자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개는 조정과 다르다. 중개자는 조정자와는 달리 보통 비공식적 제안을 하며 그 제안을 근거로 하는 정보도 자기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공한 것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 이런 두 종류의 정보를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에서 중개와 조정의 구별은 실무상 어렵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주선이 끝나고 중개가 시작되었는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중개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분쟁과 관계없는 외부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중개가 일단 시작되면, 분쟁 당사국 정부들은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안 받게 되지만, 이런 제안을 반드시 수용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그 해결책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개의 이점이다. 이점은 아주 중대한 국가이익 때문에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일 수 있다. 반면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지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타협이라면, 직접 교섭보다는 중개를 통하는 것이 정치적 양보를 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민감한 문제에 관한 분쟁이라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중개는 모든 종류의 국제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중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임을 맡으려는 중개자가 있어야 한다

#### (1) 仲介者

중개는 국제기구, 국가 혹은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엔은 물론이고 많은 지역적 국제기구들이 분쟁해결을 그들 기관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과 각 지역기구의 실무책임자들은 빈번히 주선이

나 중개에 나서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비정부기구(NGO)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개를 통해 분쟁에 개입할 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자의 역할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국가는 물론,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한 명 혹은 여러 외부자들에 의해 중개가 제공됨으로써 국제분쟁이 더 이상 비화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쟁 상황에서 능력을 갖춘, 혹은 기꺼이 나서는 중개자가 없어서 중개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분쟁에 외부자가 개입하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국은 초강대국 사이의 분쟁에 자신이 중개자로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개는 어떤 경우이건 소모적이고 피곤한 임무이고, 때로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힘들다.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국가는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종래의 우정의 반감을 사서 그 나라를 적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개의 임무가 성공했다 하여 이런 외교적 손실을 보상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제3자는 중개자의 역할을 맡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개자로 나서는 국가나 단체 혹은 개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제분쟁이 발생해도 당사자들이 중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중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이 중개를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며 중개자를 이미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은 중개라는 형태의 외부 도움을 원치 않는 것이고, 이런 입장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중개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구속력이 없고, 중개안은 그 속성상 일방 혹은 쌍방 당사국 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중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정부가 해당 분쟁이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개를 통한 해결은 언제나 어떤 타협이 산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방 당사국 정부가 자신들은 그 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아직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중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중개를 받아들여도록 한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분쟁이 진행되어 당사자로 하여금 그들이 취해 온 정책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드는 시점에 이르면, 바로 이 때에 중개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힘 겨루기로 승부가 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분쟁이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부담이 분쟁을 끝내려는 시도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고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때이다. 중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개가 좋은 방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개자에 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어떤 개인이 중개자로서 적격이나 하는 것은 그의 자질과 명성에 따라 판단되며, 어떤 국가가 중개자로 적당한지 여부는 분쟁이 시간과 장소 등 여건에 따라서 판단된다.

## (2) 仲介의 기능

분쟁 당사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양보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가 성공하려면, 중개자는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런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중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개자는 단순히 조정을 하거나, 당사자들간의 대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분쟁이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서로 접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이미 벌어졌을 수 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이 이런 예이다. 공식적 접촉이 배제된 상황에서 상호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중재자들이 나섰고, 양당사자들이 모두 주선 및 중개의 임무를 맡길 수 있다고 본 알제리에 의해 결국 접촉이 다시 가능했다.<sup>28)</sup> 당사자들 사이에 접촉이 일단 시작되면, 중개자는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28) P.Salinger, AMERICA HELD HOSTAGE, London, 1982..

점증해 온 당사자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당사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sup>29)</sup> 또한 중개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중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흔히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긴 하지만, 우세한 입장에 있는 쪽은 자신의 바램만 반영된 해결책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만일 분쟁 당사자 쌍방이 자신의 입장이 상대방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믿고, 또 그들 각자의 목표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개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중개자는 자기 자신의 비중을 이들 당사자들의 저울에 싣기도 한다. 강대국들이 종종 중개자로 나서도록 요청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를 통한 해결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분쟁 당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모두가 무엇인가를 받기는 해야 하지만, 꼭 받아야 하는 것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무엇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가는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에 만족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sup>30)</sup> 따라서 이런 당사자는 자기를 주장을 상징적 혹은 명목상으로만 인정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중개는 유용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 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용성이 더욱 클 것이다. 분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분쟁이 해결되면 끝나기 때문에 분쟁이 평화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종종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수완있는 중개자는 당사

---

29) H.G. Darwin, 'Median and good offices' in Waldock, LEGAL ASPECTS. p83

30) F.Edmead, "Analysis and prediction in international mediation" in Raman, DISPUTES SETTLEMENT, p.221 at pp. 260-270.

자들에게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그들이 얻게 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에 초래될 심각한 사태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 3. 事實調查

사실문제 혹은 법적, 정책적 문제에 대해 국가간에 의견차이가 심하여 그것 때문에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의 쟁점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일치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그 쟁점의 논의를 거부하면서, 이유는 쟁점이 된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는 교섭이 너무 장기간 진전없이 계속되어 당사자중 하나가 인내의 한계를 보이며, 평화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려던 생각을 버리고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교섭은 주선이나 중개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들도 경험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자가 관여하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왔고, 그 중에서 여기서 다루는 방법이 소위 ‘사실조사(inquiry)’라고 불리는 것이다.

전문용어로서 ‘inquiry’는 서로 연관은 있지만,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로 사실조사는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다루는 사실조사는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특정한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조사되도록 하기 위해, 중재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특별한 합의를 통해 만든 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관점에서 말하는 사실조사는 1899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도입된 사실조사위원회(the commission of inquiry)로 불리는 특수

한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 (1) 事實調查 관련 사례

1904년 10월 9일, 러일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발트해로부터 극동으로 파견된 러시아 전함들은 Dogger Bank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영국의 어선단 속으로 항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지역에 일본 어뢰정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러시아 전함의 함장은 자신들이 이들 어뢰정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오판을 내렸고, 이런 혼란 속에 발포를 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sup>31)</sup> 이 사건이 영국에 알려지자, 격한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지브랄터 해협으로 항진해 오던 러시아 함대를 나포하려는 준비에 들어갔다.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프랑스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두 나라를 설득하여 헤이그 협약에 의거한 사실조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04년 영국과 러시아 제독 각 한명씩, 그리고 프랑스, 헝가리, 미국의 제독 각 한명씩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개월간 증언을 청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1905년 2월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사건 당시 영국 어선단 안은 물론 인근에 일본 어뢰정은 없었고, 따라서 러시아 제독의 발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결론은 받아들였고, 러시아는 영국에게 약 6,5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분쟁은 종결되었다.

Dogger Bank 사건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사실 조사 위원회가 갖는 진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실조사는 헤이그 협약에 의해 원래 의도된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위원회에게 사실조사의 기능 외에 중재결정을 내리는 역할까지 맡긴 것인데, 이로 인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와 사실 문제를 항상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이 위원회가 사실조사 전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으로 조사위원회가 직무

31) R.Hough, The FLEET THAT HAD TO DIE, London, 1975.

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899년 헤이그 협약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32)</sup>

1906년 헤이그협약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된 사건은 1911년부터 그 다음해에 걸쳐 있었던 터키와 이탈리아간의 전쟁 중에 터키 해안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였다. 이 전쟁에 대해 프랑스는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 선박들이 전시 금제품을 수송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프랑스 선박을 나포하여 일어나 분쟁이 이미 중재에 회부되어 있던 상황에서 1912년 프랑스의 우편물 운반선 Tavignano가 또 나포되고, 다른 두 선박이 포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이탈리아는 공해상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에 프랑스는 튀니지 영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을 사실조사위원회를 1907년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설치하여, 이들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및 영국의 해군 장교가 각 한명씩 포함하여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주된 과제는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Tavignano의 나포가 튀니지의 영해상에서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발포가 있었던 곳은 분명히 튀니지 영해상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때, 당사자들은 다음 단계로 중재에 회부하여 다루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중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탈리아 정부가 5천 프랑의 배상에 합의함으로써 이 분쟁은 종결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후속 조치로 채용된 중재에 대한 기초작업으로써 사실조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헤이그 협약의 초안들이 예견했듯이, 비록 전부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1907년 협약을 적용한 그 다음의 사실조사도 이전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독일 잠수함이 노르웨이 선박 Tiger를 추적하여 스페인의 북측 해상에서 격침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분

---

32) 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907, Article 9-35

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건 당시의 선박의 위치였다. 당사국은 이 사건의 발생지점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위원회를 1907년 협약에 따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성원은 당사국의 해군 장교들과 중립국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이루어졌다. 상당한 어려움 끝에, 위원회는 문제의 추적 및 격침이 일어난 곳은 스페인의 영해 내라고 결론 지었다.<sup>33)</sup>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사실조사가 행해진 마지막 사건도 독일의 잠수함이 관련된 것이었다. 1916년 네덜란드의 증기선 Tubantia가 공해상에서 어뢰에 맞아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고, 전쟁이 끝난 후 분쟁 당사국은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당사국 및 덴마크, 스웨덴 해군 장교들과 스위스 국적의 법률가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문제의 어뢰 발사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Tubantia는 잠수함에 의한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려 책임이 독일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독일정부는 보고서의 결론을 수용했고, 손해배상금으로 650만 플로린<sup>34)</sup>을 지불했다.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률가를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인 사건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sup>35)</sup> 또한 Tiger 사건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행해진 각서의 교환이나 구술증거의 처리를 보면, 그 절차가 중재재판과 흡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Tubantia 사건이 있은 이후 거의 40년이 지난 1961년에 영국과 덴마크는 Red Crusader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의 저인망 어선 Red Crusader가 Faroe섬 인근에서 조업 중, 덴마크의 어업경비정을 만났는데 경비정의 함장이 불법조업을 이유로 어선의 조업중단을 명했고, 억류시킴으로서 발단이 되었다. 위원회는 1962년 분쟁 당사국들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분쟁해결을 촉진하였다.

33) Bar-Yaacov, INQUIRY, pp.156-171 참고.

34) florin 은 당시 통용되던 금,은화

35) Bar-Yaacov, INQUIRY,p.178



헤이그협약에 의거한 사실조사 사례들은 국가들이 바라는 제3자에 의한 매우 특정한 형태의 분쟁해결이 순수한 사실조사 절차에 중재재판의 뉘앙스를 가미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ed Crusader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는 이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조사와 중재재판이 융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구성이나, 절차 그리고 조사결과를 볼 때,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사법작용을 수행했다. 많은 중재재판의 재판관들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중재재판에서 처럼 증인들에 대한 주된 심문을 조사위원들이 아닌 분쟁 당사국 정부들이 동의한 후에만 공표되도록 했다는 점은 주요한 특징이다.

## (2) 事實調査의 장점

헤이그협약에 따라 제한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사실조사는 국가의 '명예'와 '중대한 이해'가 명백히 관련된 사건만이 아닌 법적 문제까지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어왔다. 그리고 기구의 구성 및 절차는 사법적 심판을 맡은 법원과 유사한 것이어서, 원래 고안될 때 의도되었던 것과는 차이를 갖게 되었지만, 이것이 위원회에 부탁되는 사건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첫째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이 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양한 인식이 병존했던 상황에서 그 문제를 교섭에 의해 푸는 것이 낫다고 판명된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sup>36)</sup> 둘째로, 사실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다른 헤이그 협약에 따른 사실조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실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제연맹, 유엔 및 유엔의 전문기구들도 사실조사를 이용했으며, 지역적 국제기구들도 종종 사실조사단을 구성하고, 1982년 해양법협약도 '특별중재'라는 항목 아래 사실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형태로건 제3자가 개입하는 분쟁

36) Cot, INTERNATIONAL CONCILIATION, p.250.

해결의 방식은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조사의 방식이 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가지 특수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사실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이란 분쟁의 쟁점이 법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로 사실에 관한 경우이며, 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그 분쟁에 관한 자신들의 판단이나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 4. 調停

국제법연구소는 1961년 국제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의 제1조는 조정을 “당사국이 상설 혹은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에 의한 모든 형태의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수단을 통해 분쟁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당사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방안의 마련을 시도하며,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신의 견해도 표명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7)</sup>

조정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규정한 최초의 조약은 1920년 스웨덴과 칠레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조정에 관해서는 단지 하나의 조항만을 두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조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을 따름이다. 조정을 선택한 후, 상설 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를 조사하는 것과 분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두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1922년에 국제연맹 총회는 회원국들에게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1925년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는 그 이후의 조약들에 모델을 제공한 상설조정위원회의 정의가 포함되기도 하였다.<sup>38)</sup>

---

37) H,Fox "Conciliation" in C,M,H W (ed), INTERNATIONAL DISPUTES : The Legal Aspects, London, 1972, p.93.

38) 송영주, 앞의 논문,2002, 33쪽.

### (1)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분쟁의 대부분은 정치적 문제 외에 법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2년에 벨기에-덴마크 조정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두 척의 덴마크 상선에 관한 사건을 다루었다. 벨기에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던 1940년에 벨기에의 항구 Antwerp에 정박중이던 덴마크 상선 Gorm과 Svava가 강제 후송된 후 없어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1927년 벨기에와 덴마크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구성된 이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벨기에가 이들 선박에 관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 사건을 다룬 곳이 조정위원회가 아닌 중재 법정이었다면, 먼저 법적 성격에 관해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규명하지 않고도 최종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문제의 사건 정확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벨기에 정부는 덴마크가 요구한 것보다 경감된 액수의 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국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은 종결되었다.

### (2) 조정의 기능

조정이라는 분쟁해결 방식의 특성에 대해 어떤 견해에 따르면, 조정을 ‘제도화된 교섭’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며, 그들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분쟁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은 중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조사와 중재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9)</sup> 조정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는 그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위원회가 조정을 중재와 유사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이해하거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

39) Chaco 위원회, Franco-Siamese위원회, Jan Mayen 사건을 다룬 위원회 활동

들의 활동은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일 가능성이 많다. 조정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문제된 분쟁의 본질과 그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통상 광범위한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활동은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을 화해시켜야 하므로 조사활동은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조정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더 캐내지 않고 조사를 중단하기도 한다.<sup>40)</sup>

조정위원회가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다룬 분쟁의 거의 대부분이 법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왔다.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지난 70여년 동안, 약20여건의 분쟁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200여개의 양자조약과 여러 다자조약 속에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보면, 조정은 그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정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자리잡는데는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먼저 양자조약들 중에는 특정한 종류의 분쟁만을 다루도록 제한된 것들이 있으며, 다자조약들에는 광범위한 유보가 허용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배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조약들에서는 그런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하나의 전형으로 제시한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분쟁해결 방법들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당사국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구 안에 있는 비공식적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도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들에는 조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절차들 속에서 조정은 온당한 자리를 잡고 있다. 비록 조정을 통하는 분쟁의 수가 적고, 이 방법을 통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Jan Mayen 사건이나 동아프리카공동체 사건 같은 예가 조정의 가치를 상기시켜 준다. 사실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정도 다양한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리고 그 이점은 국

---

40) 1958년 프랑스와 모로코 사이에 프랑스 당국에 의한 항공기 착륙지점 변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

제분쟁의 해결에 당사자이외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에서 나온다

## 5. 국제조직을 통한 해결방법

분쟁을 정치적 성격의 국제기관에 부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중재만큼이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국제분쟁의 해결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폭넓은 책무를 지닌 범세계적인 기관을 설립하려는 첫 시도가 국제연맹의 창설이었다. 국제연맹의 실패 후 1945년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 : UN)이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국제분쟁을 이 기구를 통해 다루려고 했다.

유엔의 목적은 유엔헌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가지 분명한 책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그것이 중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제분쟁의 당사자들이 평화적 수단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 (1) UN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역할을 맡은 유엔의 주요 기관은 세 기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이다. 헌장의 제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제로 하고 있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여부는 안보리가 표결을 통해 결정하지만, 이 경우에 관련 국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매우 주요한 안보리의 권한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 안보리는 그 문제가 국제적 '분쟁'인지에 관해 사법기관들이 취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34조에 의해 국제분쟁 뿐만아니라 국제적 '마찰'에 이를 소지가 있는 상화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인다.

유엔 총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조항을 많이 두고 있지 않다. 헌장 제10조부터 14조에 걸쳐 총회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의 및 권고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으로 총회는 유엔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권고를 할 수 있는 총회의 권한도 분쟁해결 문제에 미치며, 제14조에 의해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일반적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다. 총회의 권고 권한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보다 더 넓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제14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 대해 이 헌장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이나 사태에 관한 어떠한 권고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제12조 1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유엔 헌장이 총회에 부여한 권한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평화와 안전에 관한 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려고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 (2)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모두 분쟁해결에 관해 해당 국가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그들의 권한을 자주 사용해 오고 있다. 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실조사를 많이 실시했으며, 두 기관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그들 산하에 구성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sup>41)</sup>

Corfu Channel 분쟁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되어 있을 때, 안보리는 사실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분쟁에 관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지만, 같은 해 후반에 총회가 설치한 ‘발칸 특별위원회’는 사실조사 업무 뿐 아니라, 중개와 조정의 역할도 일부 수행했다.

41) E.A.Plunkett, "UN fact-finding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9 Va.J.I.L. 154(1968-5) 참조.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분쟁 당사국 사이의 직접 만남을 돕는 것이다. 그 구체적 도움으로는 교섭, 중재, 조정 혹은 주선 등이 가능하다.<sup>42)</sup> 유엔이라는 기구의 존재 그 자체가 외교적 접촉을 통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즉, 국가라는 틀 밖에서 관련 국가의 외교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으면서 접촉을 쉽게 가질 수 있으며, 비공개적으로 분쟁해결에 타협할 수 있는 장이 유엔을 통해 마련된다.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다 공개적인 다른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주로 유엔 초창기에 많이 이용되던 방식은 당사자들 사이의 교섭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한계도 드러났다. 유엔의 초창기부터 주선의 업무를 특정 개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분쟁을 지역적 기구나 다른 기관에 보내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다. 분쟁을 서로에게 위임하는 방법 이외에도 유엔의 다른 기관에 문제를 부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보리나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이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1947년에 안보리는 Corfu Channel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권고했는데 소송사건 중에는 이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경우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역시 드물었다.<sup>43)</sup>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엔이 법적 해결보다 정치적 해결방법을 확실히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 (3) UN의 역할

---

42) Raman(ed), DISPUTE SETTLEMENT, pp.367-517.참조.

43) 총회가 1949년 Peace Treaties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 것이 유엔의 법적분쟁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낸 유일한 경우였다.

유엔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려면 유엔이 국제분쟁에 정규적으로 얼마나 개입해왔는가와 그 개입이 분쟁해결을 이루거나 촉진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국이나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분쟁 당사국인 경우에는 회원국인 다른 나라를 통해 유엔이 제기되며, 분쟁당사국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유엔으로 가져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과장을 우려하는 제3국에 의해 유엔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분쟁들에 유엔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또 궁극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태해결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쟁의 성격 및 유엔이 오게 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초강대국들간의 분쟁을 유엔 사무총장이나 제3국이 중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유엔총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들도 거부권에 의해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엔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부류의 분쟁들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문제로 보고 유엔의 개입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분쟁들이다.

따라서 유엔이 해결하려고 한 분쟁의 종류는 주로 강대국들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국제분쟁 중 상당한 종류를 유엔이 다루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이해에 관련된 종류의 분쟁에는 유엔의 개입을 허용하거나 요구해왔다. 한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신생국가들의 탄생은 유엔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변화시켰고, 식민지청산과 관련된 문제를 유엔의 주요한 관심사로 만들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발전과 '국내문제'라는 이름으로 국제기구의 개입에 제한을 가해온 전통적 입장에 정치적 요소들이 첨가된다면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유엔의 태도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성공, 부분적 성공, 그리고 실패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동서 양진영의 갈등과 대립은 유엔이 집단적 안보기구로서 제구실을 못하게 하였으며 유엔은 어떤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하거나 분쟁이 다소 누그러진 시기에 감독활동을 펴는 것에는 종종 성공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면,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분쟁 그 자체의 해결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무력사용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온 것이 명백하다. 유엔은 결코 세계정부가 아니고, 다만 국제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득, 합의, 교섭, 공감대 찾기 등의 수단이 이용 가능한 하나의 외교활동의 장일 따름이다. 인간이 만든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조직과 절차는 완벽하지 못하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엔의 활동은 제도적 결함보다는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가진 문제점 혹은 사건의 성격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

#### (4)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방안

##### 1) 국제기구의 종류

1949년 창설된 유럽이사회는 공동 이익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협약체결을 촉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는 경제적 통합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유럽공동체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책임지고 있다.

군사적 통합에 관련된 기구로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가 있는데, 주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한 군사동맹의 역할을 하지만, 회원국들 사이의 비군사적 협력 및 분쟁해결 촉진에도 관여한다.<sup>44)</sup> NATO에 상응하는 동유럽의 조직체는 바르샤바조약기구(the Warsaw Treaty Organization)로서, 이는 소련에 의해 창설되어 동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 군사동맹이었다. 대서양에 있는 지역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지구(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로 1948년 창설되어

44) F. L. Kirgis, "NATO consultations as a component of national decision-making", 73 A. J. I. L. 372 (1979).

미주지역 국가들의 상호협력을 위해 그 전부터 있던 제도적 장치들을 확고히 하고, 회원국의 공통이익에 관련된 폭넓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중에는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해결도 자주 포함되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지역기구로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sup>45)</sup>와 '아랍 연맹(the Arab League)'<sup>46)</sup>이 있으며, 주요한 목적을 분쟁해결에 두고 있다.

## 2) 지역적 국제기구의 기능

지역기구의 가장 유용한 기능은 분쟁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 회원국들에게 사전 협의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고해 주는 것이다. 특히 분쟁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기구의 회합을 통한 비공식적 접촉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영국, 그리스, 터키가 관련된 사이프러스 분쟁 및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소위 '대구 전쟁(Cod Wars)'의 경우에 무력충돌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NATO의 회원국이었던 점이 서로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게 했다. 아이슬란드가 12마일의 어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야기된 양국과의 분쟁은 1961년에 NATO를 통한 교섭으로 해결되었고, 15년 후 200마일로 확대된 주장으로 생긴 분쟁에도 NATO가 그 해결에 기여했다.<sup>47)</sup>

1963년의 알제리-모로코 국경분쟁에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의 역할처럼 장기간에 걸쳐 주선을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 직원이나 회원국들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이 주선에서 중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그 하부 기고나이나 내부 人士를 통해 중개를 제공하는 방식 대신에 외부의 도움을 통해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도 있다. 사실조사와 조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은 있으나, 지역적 국제기구가 필요

45) T. O. Elias, "The 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59 A. J. I. L. 243(1965)

46) B. Boutros-Ghali, "The Arab League(1945-1970)", 25 Rev. Egypt Droit Int. 67 (1967); S. J. Al kadhem, "The role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in settling inter-Arab disputes", 32 Rev. Egypt Droit Int. 1 (1976)

47) H. Jonsson, Friends in Conflict. London. 1982. pp.179-181.

한 자원과 조직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 3) 지역적 국제기구와 재판과의 연계

지역 협정 속에서 어떤 분쟁은 사법재판 절차를 통해 다루기로 규정하고, 그런 임무를 담당할 재판소가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그리고 설립이 추진되었던 이슬람재판소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고타 협약과 같은 지역 협정도 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더하여, 지역기구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재판을 통한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같은 지역 안의 국가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의한 압력은 당사국들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판결이 내려지면, 지역 기구의 회원국들은 당사국들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거나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지역기구에 의한 절차나 기타 다른 절차를 배타적으로 혹은 재판에 앞서 이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많은 국가들은 합의를 통해 사법적 해결방법을 다른 방법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법적 방법 이외의 방법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국가들은 이러한 합의를 할 자유가 있고, 그 합의된 대로 효과가 있다.

### 4) 지역적 기구와 UN

유엔과 지역기구들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된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지역기구가 갖는 권한의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을 다루기 전에 지역기구에 의한 해결노력이 종결되거나 소진되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기구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제약은 유엔 헌장 제5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협정이나 지역기구에 의한

‘강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이 조항의 내용이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지역기구들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유지에 관한 최종 책임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어떤 국가들이 분쟁이나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누구도 그들이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할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점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역기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을 가로채서 직접 다루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기구들은 분쟁해결에 건설적인 기여를 종종 해 왔으며, 지역기구들이 그 지역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엔은 자원과 시간을 아껴 지역간 분쟁이나 지역내의 복잡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분업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모든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지역기구의 효용성과 권위를 훼손할 것이다. 또 지역 외부의 국가들이 개입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지역기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 제2절 사법적 해결방안

사법적 해결방법은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중재재판, 사법재판, 지역적 사법재판이 있다.

### 1. 仲裁裁判

臨時的 또는 常設的 仲裁法院에서 국제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중재재판은 법을 적용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판결을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적 절차에 불과한 조정 등과 구별된다. 중재재판을 하는

국제법상의 기관은 중재법원인데 여기에는 特別仲裁法院과 常設仲裁法院이 있다.

중재재판제도는 1794년 11월 19일 영·미간의 제이조약을 계기로 근대적 중재재판제도가 등장하였다. 이후 남북전쟁 중 영국의 중립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1872년 알라바마 중재사건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비교적 격식을 갖춘 재판제도로 발전하였으며, 1901년에는 1899년의 헤이그협약에 의해 상설 중재법원이 창설되었다. 그 후 국제연맹 총회는 1928년 중재재판의 일반조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조약을 바탕으로 중재재판에 관한 많은 양자조약과 지역조약<sup>48)</sup>이 체결되었다. 한편, 國際法委員會(ILC)는 1958년 중재절차에 관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총회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재재판절차의 모델이 되는 데 그쳤다.<sup>49)</sup>

#### (1) 중재기구

중재재판에 있어서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은 구성될 중재기관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같은 수의 자국 중재위원을 지명하고, 이에 심판 역할을 할 한 명의 중립적 인사를 더 포함시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당사국 출신 위원들이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립위원에게 해결방안을 위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1814년의 '켄트조약'이고, 그보다 앞서 1794년의 '제이조약'은 중립적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당사국 출신 위원들만으로 중재기구를 구성했다. 이런 초기의 영미 중재기구들은 외교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함께 고려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사법적 재판기관은 아니었다. 반면에 중재를 위해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사법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중재기구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중재의 또 다른 형태는 외국정부나 그 수반에게 중재를 의뢰하는 것으로, 국

48) 예로 1957년의 유럽조약.

49)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 870쪽.

50) 류춘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8쪽.

제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이런 역할을 종종 수행했다. 이런 형태의 중재는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의 개입으로 효과를 보려는 점에서, 중개가 갖는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부수반들은 중재안을 내놓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재결정에 법적 고려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중재는 본질적으로 사법적 절차라고 인식되었고,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나오는 결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Clipperton Island 사건에 대해 이탈리아 국왕이 내린 중재결정의 예처럼, 1931년까지 국제법에 근거한 중재가 정기적으로 있었다.

공동(중재)위원회나 외국정부 및 그 수반에 의한 중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재 형태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다. 1899년의 헤이그 협약은 중재자 명단을 마련하고 나중에 논할 '상설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라는 명칭을 붙였다

## (2) 仲裁判定의 효과

중재기구가 내린 판정은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들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판정의 해석에 이견을 보이거나 판정을 변경 또는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절차는 국제법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의뢰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중재 판정을 해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으로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sup>51)</sup> 분쟁을 중재에 의뢰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 분쟁의 종식을 원한다는 것이므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해석에 관한 이의 제기는 그것이 판정의 옳고 그름을 따

51) J.G. Merrill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Manchrster,1988).p.60.

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므로 훨씬 쉽게 정당화될 수 있고 그래서 종종 허용된다.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이미 내려진 판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필요를 공감하여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중재 합의 속에 첨부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예를 들어, 해양경계 문제를 중재에 의뢰한 Guinea와 Guinea-Bissau의 합의 속에는 판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절차와 함께 판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까지 두었다. 이와 함께 중재결정 속에 잘못된 계산이나 표현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잘못은 판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정 권한은 중재기구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권한이 부여될 필요는 없다.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 중재에 의뢰할 때는 당사국들이 모두 승복하여 실행에 옮길 결정을 받아내어 그것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정당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그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적절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건들이다 따라서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은 판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sup>52)</sup> 중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 중재자는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못한다. 중재자의 권한은 당사국들의 합의로부터 나오므로 중재자의 선임이 당초 합의와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 (3) 仲裁의 한계

지난 200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재라는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재판관들로부터 판정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 중재는 당사자

---

52) 류춘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0쪽.

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중재의 결과로 나온 판정은 해석상의 문제나 판정의 무효 주장 등이 제기되지 않는 한 분쟁은 종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1945년 이래로 국가들이 특정 종류의 분쟁들을 처리하는데 중재가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재기구에 맡겨진 사건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지속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를 제거하는데 중재가 아주 편리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조약에 관한 관행 속에서도 중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때로는 조정과 결합한 형태로, 때로는 아주 다양한 주제에 관한 다자 혹은 양자조약의 분쟁해결 조항들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조약에 의한 중재가 단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에 관한 조항이 무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중재를 이용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런 조항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결국 분쟁의 소지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중재가 국제분쟁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중재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가들은 분쟁에 사법적 재판을 항상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중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별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교섭이나 다른 외교적 수단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1982년 해양법협약은 중재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조정을 비롯한 다양한 평화적 분쟁해결수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가 갖고 있는 약점 중 또 하나는 판정의 실행 문제이다. 중재기구가 내놓은 해결책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이지만, 판정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그 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즉, 판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중재의 한계이다.<sup>53)</sup>

이런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우선 최상이기는 하지만 가능성 면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은 판정에 불만을 가진 당사국이 이행 의무를 거

---

53) 류춘열, 앞의 논문, 2004, 51쪽.



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판정을 내놓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판정 무효의 주장이나 더 일반적으로 판정의 이행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분쟁해결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중재의 경우도 그 효력은 관련 정부들이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sup>54)</sup>

## 2. 常設仲裁法院(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국제분쟁을 재판하기 위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해 1901년에 설치된 常設의 중재법원을 말한다. 이 법원은 상설이라고는 하나 法官名簿가 豫備的으로 비치되어 있어 분쟁 발생시 분쟁당사국이 이 명부 속에서 중재법관을 선임하여 法庭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함을 의미할 뿐이다.<sup>55)</sup>

### (1) 상설중재법원의 구성과 관할

상설중재법원(PCA)은 당사국이 임명한 각각 4명 이내의 법관 전원으로 구성되고 법관은 국제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높으면서 법관의 임무를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법관이 수 개국으로부터 임명될 수 있으며 임기는 6년이고 재임될 수 있다. 분쟁당사국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재판할 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이 분쟁을 법원에 부탁할 경우에 법원의 법관명부에서 일정수의 법관을 선정하여 구성하게 된다. 당사국 사이에 재판정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通常仲裁裁判庭 또는 簡易仲裁裁判庭을 구성한다.<sup>56)</sup>

PCA의 人的 管轄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 한하나, 비당사국이 법원에 訴를

54) 송영주,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pp.47-53.

55) 류춘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52쪽.

56) 헤이그협약 제44조, 45조.

제기할 것과 분쟁당사국들 사이에 합의했을 때는 일정분쟁에 대해 비당사국간 또는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분쟁에도 관할권이 미친다. 헤이그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의 법적 문제, 특히 조약의 해석, 적용문제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재재판이 가장 유효하고 공평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분쟁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중재재판에 의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호소할 수 있음을 분쟁당사국에서 주지시키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임을 인정하고 있다.<sup>57)</sup> 일반의정서에서는 당사국은 법적 분쟁 이외의 모든 분쟁을 제39조에 의한 유보된 사항과 분쟁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해 구성되는 중재법원에 부탁해야 하며 중재법원이 구성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 일방의 신청에 의해 분쟁이 부탁된다.<sup>58)</sup>

## (2) 裁判準則과 판정의 효과

중재재판에 적용할 준칙은 중재약정에서 정하게 된다. 재판준칙은 보통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하나, 당사국이 희망할 경우에는 衡平과 善이나 일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중재약정에 특별히 규정된 그 밖의 원칙도 될 수 있다.

정식으로 선언되어 분쟁당사국의 대리인에게 통고된 裁定(award)은 확정적이며 최종적이다. 재정의 해석 또는 집행에 관해 당사국 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반대가 없는 한 그 재정을 내린 중재법원에 다시 제기된다. 재정은 분쟁당사국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sup>59)</sup>

## 3. 國際司法裁判所(ICJ)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제14조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Permanent Court of

57) 헤이그협약 제38조, 48조.

58) 헤이그 협약 의정서 제21조, 27조.

59) 이병조 · 이중범, 국제법신강, 871-873쪽.

International Justice, PCIJ)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의거 1922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법관의 구성과 소송 절차 등이 분쟁발생 이전에 분쟁 당사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최초의 "상설법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연맹이 해체된 1939년까지 PCIJ는 79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51건은 係爭事件에 대한 판결이었으며 28건은 勸告的 意見의 판결이었다. 국제연합의 등장과 함께 그 헌장에 따라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PCIJ의 뒤를 이었다. ICJ규정은 PCIJ규정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UN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 분쟁해결을 위한 헌장이 되었다.(UN헌장 제92조)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승리하고 있던 연합국 측은 PCIJ가 보여준 중요한 업적과 기능에 비추어 전후에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법적 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Dumbarton Oaks 회의에서 위임된 대로 소집된 법률가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사법재판소(ICJ) 설립문제를 협의하였다. 미국과 소련 등 주요 연합국 국가 중 13개국이 PCIJ규약의 당사국이 아닌 점과 이 규약의 당사국 중 16개국이 국제연합 설립과 그 헌장을 채택하는 San Francisco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PCIJ와는 전혀 별개의 국제사법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CJ의 규정은 1926년 개정된 PCIJ규약을 거의 답습하는 것으로 완성되었고 1946년 4월 18일 Hague 평화궁전(Peace Palace)에서 ICJ는 개원하였다.<sup>60)</sup>

#### (1)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UN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이다. 각 재판관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할 때 재선에 출마할 수 있다. ICJ규정 제9조에 의하면, 재판관의 선출은 '구성원 전체가 주요 문명권 및 세계 주요 법제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나 분쟁을 처리하는 권위를 수립하고

60)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2000, pp881-882.

유지하려면, 재판소 구성원인 개개인의 재판관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판소 규정 제2조는 재판관의 자격요건으로 "높은 도덕적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서 각자 출신국가에서 最高位 법관의 자격이 있거나 탁월한 법학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각국의 재판관 추천기구가 독립적으로 후보를 지명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그 동안의 뚜렷한 추세를 보면, 법률고문이나 국제법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업외교관과 같은 이들이 재판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 때문에 특정 사건에 어떤 재판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판을 요구한 사건에서 현직 재판관들 중에 분쟁당사국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는 그 사건에 한해서 재판소의 구성원이 되는 '임시 재판관(adhoc judge)'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ICJ의 모든 재판관들은 개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 나라의 대표라는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소에 사건을 맡기는 국가들이 그 전제조건으로 임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추세를 볼 때, 이 제도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sup>61)</sup>

ICJ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결정된다.<sup>62)</sup> 하지만 ICJ 규정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전체 재판관 정원보다 적은 수의 재판관들로 '特別裁判部(chamber)'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목적은 특수한 종류의 사건들을 맡거나, 해당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어떤 개별 사건의 처리만을 위한 것 등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臨時 特別裁判部가 구성된 것은 국제재판소가 설치된 지 한참이 지나 1972년 재판소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후인 1981년의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Gulf of Marine 사건이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최종 결정은 ICJ가 비밀투표의 방식으

61) Rosenne.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p.407.)

62) L. V. Prott, "The latent power of culture and the international judge"(Abingdon, 1979). pp.110-114, I. R. Suh. "Voting behavior of national judges in international courts". 63 A. J. I. L. 224 (1969).

로 내리게 되지만, 재판소는 특별재판부의 구성에 관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최소한의 재판관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단독 재판관만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인원수에 관한 규정도 없지만, 전원합의부에서 의결정족수가 9명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관 수가 7명을 넘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Gulf of Marine 사건 및 그 후의 특별재판부가 이용된 세 사건들에서 5명의 중재위원들이 맡는 점을 고려하여 5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중재재판에서 보통 5명의 중재위원들이 맡는 점을 고려하여 5명이라는 인원수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재판관들은 통상적인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현직 재판관들 중에서만 선출된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을 맡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에도 역시 '임시 재판관'들이 선임될 수 있다.<sup>63)</sup>

## (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ICJ의 인적 관할은 ICJ규정에 의하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될 수 있고, ICJ는 규정당사자에게 개방되며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규정당사국이 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ICJ는 비규정당사국에게도 개방될 수 있다.<sup>64)</sup>

물적 관할은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당사국이 법원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헌장 또는 현행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다. ICJ의 재판관할권은 그 성격에 따라 任意的 管轄權과 强制的 管轄權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임의적 관할권을 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부탁되는 모든 분쟁

---

63) Gulf of Marine 사건에서 캐나다는 임시재판관 1명을 선임,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사건에서 당사국 두나라가 각각 한명씩 임시재판관을 임명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세명과 함께 특별재판부를 구성.

64) UN헌장 제93조 2항에 의하여 비회원국으로서 규정당사국이 된 국가는 스위스 (1947)가 있다.

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분쟁의 일방당사국이 분쟁을 ICJ에 제기하려 해도 타방당사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ICJ는 그 분쟁을 재판할 수 없다. 임의적 관할권제도는 '어떤 국가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제소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국내법질서에서의 강제적 관할제도와는 뚜렷하게 대조된다.<sup>65)</sup>

강제적 관할권이란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제소한 분쟁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제로 그 분쟁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PCIJ에 있어서와 같이, ICJ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상호간의 제소의 합의가 있어야만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제사회는 독립절대의 주체인 국가들이 주권평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호 병존하고 있다는 대전제로 볼 때 국제사법재판을 위한 ICJ의 관할권이 원칙적으로 이처럼 임의성을 가져야 함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분쟁의 해결기구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판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두개의 논리적 상황의 충돌을 절충시킬 목적으로 국제재판에 있어서도 類似 強制管轄權을 인정하는 및 가지 방식이 고안되어 왔다.

ICJ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UN헌장이나 현행 협약에서 특히 約定하는 사항'에 ICJ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은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에 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특정분야의 분쟁을 그 협약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의 제소로 ICJ에 부탁할 수 있다는 約定管轄條項(compromisary clause)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ICJ규정 제36조 제1항의 '헌장과 현행 협약에서 특히 約定하는 사항'이다

해양법에 관한 협약들 중에는 이러한 ICJ관할을 인정하는 約定管轄條項을 내포한 협약들이 많다. 그 예로 해양법에 관한 1958년 Geneva 4협약에 대해서 1958년 4월 29일 Geneva에서 체결되고 1958년 9월 30일 발효된 "紛爭의 強制的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있다. 이 선택의정서에서는 이들 4협약의 해석

65) 이병조·이중범, 앞의 책, 878쪽.

과 적용에 관한 계약국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당사국이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선택의 정서의 당사국인 일방 분쟁당사국의 제의에 의해 ICJ에 제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양법에 관한 Geneva 4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분쟁에 관해 장차 발생될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의로 ICJ의 관할을 인정해야하는 이 선택의정서는, 분쟁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고 강제관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명백하고 광범위한 국가적 의무를 부과시키게 되므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였다. 이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36개국에 불과하다.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ICJ의 재판관할권을 동일한 재판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합의 없이 당연히 의무적임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항'이란 ①條約의 解釋, ②국제법상의 문제, ③확정된 경우 國際的 義務違反을 구성하는 事實의 存在, ④國際的 義務違反에 대한 賠償의 性質과 範圍 등이다.

이러한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나라는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게 되어 위의 4가지 사항의 법률적 분쟁에 관해서는 타방 분쟁당사국의 제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경우에 제소의 의사가 없을지라도 이에 응소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판의무는 漂擇條의 受諾을 선언한 국가간에만 발생한다.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시 특정국가와 상호조건으로 수락한 경우는 그 특정국가와의 분쟁에서만 재판의무가 생긴다. 수락선언은 일정한 기간, 분쟁의 특성 등의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선택조항 수락의 선언서는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PCIJ규정 제36조에 의한 수락선언으로 계속 유효한 부분은 ICJ규정 제36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sup>66)</sup>

ICJ는 재판 이외에도 총회·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

66) ICJ규정 제36조 제2항, 5항.

제에 대한 '勸告的 意見(asvisory opinion)'을 부여할 수 있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ICJ는 권고적 의견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에서 판결과 다르나 그 중요성은 높이 평가된다.

### (3) 재판준칙

ICJ는 분쟁을 분쟁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條約, 慣習國際法, 文明國家의 法의 一般原則, 判例와 國際法學者の 學說에 의거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ICJ는 이상의 것 이외에도 분쟁당사국이 합의를 하는 때에는 '衡平과 善(ex aequo et bono)'에 의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sup>67)</sup> 그런데 재판준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적용법규의 欠缺(non liquet)'을 이유로 재판거절이 가능한가하는 것인데 규정 제38조 1항 3호에서 재판의 준칙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으므로 재판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sup>68)</sup>

### (4) 判決의 효력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나 先例拘束性은 부인되고 그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국과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미친다. 다만,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어 조약당사국인 제3국이 소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도 예외적으로 既判力이 미친다.<sup>69)</sup> 또한, 판결은 一審으로 종결되고 上訴할 수 없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이 판결 당시 ICJ 및 자국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요소가 될 성질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실을 발견한 지 6개월, 또는 판결이 있는 지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의 절차는 보통의 재판절차와 동일하다.<sup>70)</sup>

소송사건의 최종결론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하지만, 판결이 분쟁해결에 항상 바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첫째, 어떤 분쟁을 재판절차에 부탁했을

67) ICJ 규정 제38조 1항, 2항.

68) 이병조·이중범, 앞의 책, 881쪽.

69) ICJ 규정 제59조, 63조.

70) ICJ 규정 제60조, 61조.



때, 당사국들이 얻고자 한 것이 재판의 고유한 기능과는 달리 분쟁의 확실한 해결이 아닐 수 있다. 환언하면, 당사국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좁힌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분쟁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재판을 청구한 목적인 경우도 있다

둘째로, 당사국의 의도가 재판을 분쟁해결의 여러 문제들 중 단지 하나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그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재판부탁 합의 속에 실제적 또는 이론적 모호함이 있는 경우, 재판소의 우선적 임무는 당사국들의 의도에 관한 의견불일치를 해소하고 ICJ에게 맡겨진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Libya-Malta 대륙붕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당사국들이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로 원칙적 합의를 한 경우에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속하고 수용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불필요한 논의를 양산하게 되고, 재판의 지연과 방해를 위한 소송전술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 것은 확정적인 해결책을 구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분쟁의 당사국 모두가 적극적인 소송당사자라면, 재판소의 판결만으로 그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재판에 부탁한 당사국이 재판의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재판의 결과를 무시한다면, 비용손실은 別論으로 하더라도 분쟁을 정치의 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되어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들 중에는 전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 예가 있다. Frontier Dispute 사건에서는 특별협정에 실행에 관한 문제를 미리 명시해 두었고, Gulf of Maine 사건의 특별협정에는 지도상의 좌표와 해도, 그리고 기타 기술상의 문제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며, 전문가 한 사람을 임명하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재판부를 보조할 뿐 아

나라, 해양경제 설정 및 그 준비에 당사국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분쟁의 한 당사국이 재판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할권에 관한 동의만 있으면 당사국이 재판을 원치 않더라도 재판을 열 수 있다. ICJ규정에 의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이 있고 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 및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가진다고 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한 당사국이 법정에 나오기를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개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sup>71)</sup>

#### (5) 판결의 집행

판결이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소국이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에서는 불완전하나마 아래의 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승소국이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다. 패소국이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국가책임이 성립한 경우에 위법행위국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승소국은 1차적으로 패소국에 대하여 판결내용의 이행을 요구하고 패소국이 그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2차적으로 自力救濟에 의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력구제방법은 어디까지나 국제법과 UN헌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국제조직에 의한 집행으로써 판결 후 일방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고 또한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sup>72)</sup> ICJ규정이나 헌장에 총회가 판결을 집행하는 데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UN총회는 헌장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권한에 입각

---

71) Sir Gerald Fitzmaurice, "The problem of the 'non-appearing' defendant government" 51 B. Y. I. L. 89 (1980), I. Sinclair, "Some procedural aspects of recent international litigation", 30 I. C. L. Q. 338(1981); J. I. Charney, "Disputes implicating the institutional credibility of the Court" in Damrosch,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228 참고.

72) 이병조·이중범, 앞의 책, 883쪽.

하여 헌장 제12조의 제약 하에 승소국의 호소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패소국의 판결불이행문제를 토의할 수 있고 판결 불이행국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회원국에게 그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up>73)</sup>

#### 4. 地域的 司法裁判

지역적 사법재판이란 UN헌장과 국제법상의 지역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역적으로 상설법원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 예로는 유럽人權法院<sup>74)</sup>과 유럽司法法院<sup>75)</sup>을 들 수 있으며, 기타 業洲人權法院<sup>76)</sup>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 사법재판은 분쟁을 각 지역의 역사성,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73) 이병조·이중범, 앞의 책, 884쪽.

74)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한 당사국 간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 협약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상설법원으로서 1958년 설립.

75) EU의 최고법관으로서 분쟁 발생시 EU조약과 EU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소재.

76) 1969년 11월 22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San Jose)에서 제정된 業洲人權協約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그 구성, 운영, 관할 면에서 유럽인권법원과 유사.

##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방안

### 제1절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및 해결구조

#### 1.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정치적, 사법적인 방법이 행해져 왔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분쟁해결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의 다양성과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907년 교전당사자들에 의한 외국선박의 포획에 관한 해양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관할권을 갖는 '國際捕獲委員會(International Prize Court)'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각국에 의하여 추진되어 제2차 헤이그 평화會議에서 해상포획의 대상이 된 敵國人 또는 中立國人이 국내의 포획재판소의 검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접 출소할 수 있는 '國際捕獲裁判所' 설치를 위한 조약안이 채택되었으나 어느 국가로부터도 효력발생에 필요한 비준을 얻지 못하여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편, 국제연맹은 해양법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Shucking의 제안에 의하여 분쟁해결권한을 갖는 '國際水域委員會(International Waters Office)'의 설치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다. 이후 국제연합이 결성되고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海洋法會議에서 해양법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정에 있어서, 국제법위원회는 해양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국제법상 여타의 분쟁과 구분하여 해양법학자 및 해양과학자 등의 해양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로 하

여금 해양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다시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에는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는 特別委員會(Special C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륙붕協約에 있어서는 그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강제적 중재제도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전자의 특별위원회의 설치만 규정되었다. 이 특별위원회제도는 지역적 국가군의 이해에 따라 참여하게 대립하여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채택되었다.

해양법상의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1958년 4개의 제네바협약의 당사국들은 이들 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으로서 자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어떤 해결방법이 당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른 해결방법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재판소의 強制管轄權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選擇署名議定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전통 국제법의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이전 제네바 해양법 협약 또는 관습법 등에서 볼 수 없었던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海峽에 있어서의 통과통항, 군도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개념의 혁신, 심해저 및 그 자원의 공동관리, 포괄적 해양환경개념의 채택 등 혁신적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존의 해양법질서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유엔해양법회의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참석자들은 기존의 해양법질서 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법적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 국제법상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直接交渉, 周旋, 仲介, 審査, 調停, 仲裁, 司法裁判에 의하거나 地域的 機構 또는 協定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으며, 해양분쟁도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 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일반적 분쟁해결제도는 해양분쟁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sup>77)</sup> 해양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채택된 '漁業 및 公海 生特資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술의 특별위원회제도도 그 분쟁해결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당사국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그 효과가 의문시 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괄적인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며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장래의 해양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각국의 대표들 및 여러 국제법학자들의 견해가 유엔해양법회의의 진행과정에서 강력하게 표출되었으며, 결국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포괄적이며 강제적인 제3자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규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는 우선 당사자들 자신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國際海洋法裁判所 등을 통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통의 신념 및 목표에 의하여 그 설치가 추진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정립과 관련하여 1973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深海底委員會의 마지막 會期에서 미국이 전 9조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77)</sup> 미국의 초안은 분쟁해결절차로서 임의적 절차와 강제적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임의적 절차로서 교섭, 주선, 중개, 조정, 중재 그리고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별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적 절차로서는 특히 해양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야말로 海洋界의 새로운 세계적 질서의 기초를 이루게 될 것이며, 해양계 법체계의 성공은 앞으로 채택하게 될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77) 김부찬, '해양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p.94-105.

78) United State, Draft Articles for a chapter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 Doc. A/Ac. 138/97(1973).

미국은 특히 일반적인 관할권을 갖는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새로운 해양법협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이러한 재판소로 하여금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서는 해양분쟁 해결절차의 종류, 특히 체결 예정인 해양법협약의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 규정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1974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에 관한 협약안의 작성에 관여할 '非公式作業그룹'이 구성되었는데, 여기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①정치적, 경제적 압력 및 긴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에 기초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제도가 요구되며, 국가간의 정치적, 군사적 힘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평등을 보장하고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②가능한 한 협약의 해석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의무적 분쟁해결의 장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④분쟁해결제도는 협약의 통합된 부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서 협약에 규정되는 분쟁해결제도는 국가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분쟁 해결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대부분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비공식적, 임의적 절차'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공식적, 강제적 절차'를 포함하도록 한다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작업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문서는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11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비적 작업문서가 1975년 제3회기에서 논의되고 수정되어 2개의 범주로 된 17개 조항과 몇 개의 하위부속서로 구성된 비공식단일교섭초안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1976년의 제4회기에서는 이 초안과 함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장인 Amerasinghe에 의하여 제시된 案이 같이 검토된 끝에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단일교섭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개정단일교섭초안 제4장은 처음에 미국이 제시한 초안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강제적 절차로서 仲裁裁判所, 特別仲裁裁判所, 國際海洋法裁判所, 國際司法裁判所 중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장에 심해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해저 재판소(Sea-Bed Tribunal)를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두 개의 분리된 제도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단일교섭초안의 분쟁해결제도는 1977년 제6회기에서 교섭초안을 통합하는 것으로 채택된 非公式統合交渉草案의 제15장에 규정되면서 비로소 협약안은 하나의 '協約草案(Draft Convention)'으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분쟁해결에 관한 해양법협약초안은 1979년 제8회기에서 마련된 제1차 改正非公式統合交渉草案,<sup>79)</sup> 1980년 제9회기에서의 제2차 개정비공식통합교섭초안,<sup>80)</sup> 같은 해 속개된 제9회기의 해양법협약초안의 비공식초안,<sup>81)</sup> 그리고 1981년 제10회기의 속개회의에서의 해양법협약안(Foemal Draft Convention)<sup>82)</sup> 등에서 계속 유지되었으며, 결국 1982년 4월 30일 제11회기에서 UN海洋法協約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2.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구조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과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그 결정이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재판과 그러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정절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협약에 규정된 표현을 기준으로, 총칙에 규정된 일반절차, 조정절차, 일반적 강제절차

79) UN Doc. A/CONF. 62/WP. 10/Rev.1, April 28, 1979.

80) UN Doc. A/CONF. 62/WP. 10/Rev.2, April 11, 1980.

81) UN Doc. A/CONF. 62/WP. 10/Rev. 3/Add.1, September 22, 1980.

82) UN Doc. A/CONF. 62/L.78, August 28, 1981.



및 특별강제절차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1) 조정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자들에게 UN헌장 제33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은 우선 UN헌장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섭, 중개, 심사, 조정, 중재재판, 사법재판 그리고 지역적 기관이나 협정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로서 규정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고유절차가 적용된다.<sup>83)</sup>

교섭, 주선, 중개, 심사, 조정, 중재재판 및 사법재판에 대하여는 앞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유엔해양법 협약 총칙에서 조정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본다. 협약 제15장 제1절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 총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협약이 제3자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유일하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다. 조정은 강제절차의 적용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強制的 調停(a compulsory conciliation)'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제3자적 분쟁해결절차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84)</sup> 1982년 해양법협약은 이전의 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상설조정기구 대신에 수시적(ad hoc)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맡기도록 했다. 모든 유엔해양법협약 締約國은 4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 UN事務總長에게 제출하고 UN사무총장은 이들 명단을 모아 조정위원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한다.<sup>85)</sup>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분쟁당사국은 자국

83) 유엔해양법협약 제280조 및 제282조.

8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2000, 894쪽.

85)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조.

민의 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한다. 위원장 선임에 관한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에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고, 당사국이 조정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때에도 사무총장이 또 이들을 선임할 수 있다.<sup>86)</sup> 제5부속서의 제2조는 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공정성, 전문성 및 성실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전문가일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sup>87)</sup>

어떠한 국제분쟁이라도 전통적 조정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임의적 조정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의하여 강제적 부타이 이루어지는 분쟁은 다음과 같이 특정되어 있다.

첫째, 특정한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를 이 협약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탐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으로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조정위원회는 제246조 제6항에 언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나 제246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유보할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sup>88)</sup>

둘째,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 또는 허용어획량, 자국어획능력, 타국에 대한 잉여양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령의 확립을 결정할 재량권을 포함하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협약 제15장 제1절에 따른 부타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서 (i)연안국이 적절한 보존, 관리조치를 통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ii)연안국이 다른 국가의 어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종의 허용어획량과 자국의 생물자원 어획능력 결정을 그 다른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한 경우, (iii) 연안국이 선언한 잉여분 전부나 일부를 제62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또한 연안국이 이 협약에 부합되게 정한 조

86) 상기 협약 제5부속서 제3조.

87)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a Universal Character)'의 제85조.

88)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2항 (b).

건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할당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조정절차가 적용된다.<sup>89)</sup>

셋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歷史的 灣 및 權原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의 발효 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육지영토 또는 도서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의 동시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조정절차에서 제외된다.<sup>90)</sup>

조정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위원들의 과반수로써 행한다.<sup>91)</sup>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 하에 다른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약국들에게 그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구두 또는 서면의 견해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토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당사국들에게 촉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주장과 반론을 검토하여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sup>92)</sup>

조정위원회는 그 구성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사건에 관한 조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분쟁사건에 관련된 사실문제 모두에 대한 결론과 또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기록하여야 한다.<sup>93)</sup> 위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정절차의 내용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거의 동일하다.<sup>94)</sup> 다만 1969년 조약법 협약에서 규정한 조정은 '資格 있는 法律家(qualified jurists)'로 구성된 명부에서 선임

89)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3항 (b).

90)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1항 (a) d).

91)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4조.

92)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5조 및 제6조.

93)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7조.

94)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Annex, Text in (1969) 63 AJIL 875.

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정이나 1969년 조약법협약상의 조정에 있어서나, 어느 경우에도 조정위원회의 결론이나 권고를 포함한 보고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2) 仲裁裁判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로 (i) 제6부속서에 의거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i) 국제사법재판소(ICJ), (iii) 제7부속서에 의거한 중재재판소 (iv) 제8부속서에 의거한 특별중재재판소를 규정하고, 체약국은 서명, 비준, 가입 시나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위 4가지 사법적 절차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함을 서면으로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들은 예외 없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이러한 4가지 절차를 선택하는 선언이 없으면, (iii)의 제7부속서에 의거한 중재재판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sup>95)</sup> 중재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다른 절차를 수락하는 명백한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 당사국들이 동일한 종류의 사법적 절차를 서면선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사법적 절차에 분쟁해결이 부탁될 것이고,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선언한 경우 해결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절차에 의하고,<sup>96)</sup> 상호 합의가 없으면 제7부속서에 의거한 중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 1) 중재절차의 개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분쟁은 다음 3가지 경우에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첫째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이이고, 둘째,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로서, 분쟁 당사국의 일방이 서면 선언으로 중재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95)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3항.

96)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4항.

리고 셋째,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는 강제절차로서 어떤 방식도 선택한 바 없는 당사국은 결국 중재재판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당사국이 서로 다른 방식을 강제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도 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분쟁은 중재절차에 의하게 된다.<sup>97)</sup> 분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분쟁을 중재절차에 부탁할 수 있고 이 통고에는 청구내용, 청구이유 그리고 이유에 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sup>98)</sup>

## 2) 중재재판소의 구성

당사국들은 자격 있는 4명의 중재재판관을 선정하여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UN사무총장은 이들 중재재판관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당사국은 이때 海事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는 사람들을 지명해야 한다.<sup>99)</sup>

중재재판소 재판부는 양 당사국간의 분쟁인 경우에 통상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재판을 신청하는 당사국은 중재재판관 명부로부터 자국민 1명을 선임하여 제7부속서의 제1항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타방 당사자는 그 통고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역시 중재재판관명부상의 자국민 재판관 1명을 선임한다. 다른 3명의 재판관 중에서 중재재판관소 소장을 임명한다 타방 당사국의 자국민 중재재판관의 선임이 없는 경우, 또는 중립적인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한다. 만일 재판소 소장이 분쟁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해양법재판소의 다음 선임재판관이 임명한다. 둘 이상의 분쟁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쌍방 당사자의 경우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한다. 수 개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각기 1명의 自國籍 仲裁官을 임명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의로 제3국적의 중립 중

97) 유엔해양법협약 제280조, 상기 협약 제287조 1항 (c),상기 협약 제287조 3항.

98)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1조.

99)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2조 1항.

재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립 중재관의 수는 각 당사자가 선임한 자국적 중재관의 수보다 1명이 더 많아야 한다.<sup>100)</sup>

### 3) 仲裁判定

분쟁 당사국 간에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는 중재절차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데, 그 절차는 당사자 모두에게 각기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자국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관련 문서, 시설 및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증거 또는 전문가를 부르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관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101)</sup>

일방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缺席하거나 辯論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判定을 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재판관의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決定投票權을 갖는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 및 법률상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주요사실에 국한되며 판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판정에는 판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과 판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판관들은 판정의견 외에 각자 個別意見 또는 反對意見을 첨부할 수 있다.<sup>102)</sup>

판정은 분쟁당사자가 미리 상소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상소할 수 없으며 판정에 구속된다. 다만 판정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부탁에 의하여 원래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가 결정 한다.

100)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3조 (g), (h).

101)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6조.

102)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6조 내지 제10조.

### (3) 特別仲裁裁判

고도의 전문적이면서 기술적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판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적인 시도가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약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를 교훈 삼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더 발전된 분쟁해결제도의 형태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해양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 제287조 제1항의 규정과 제8부속서에 따라 특별중재재판소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sup>103)</sup> 특별중재절차로 다룰 수 있는 분쟁은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다. 즉 ①漁業 ②海洋遠境의 保護와 保存 ③海洋의 科學的 調査 ④ 船舶起因 汚染 및 投棄汚染에 관련된 航行問題의 4가지 분야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만이 대상이 된다.

#### 1)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sup>104)</sup> 그리고 재판관의 선임절차는 중재재판관 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분야의 전문가 명부로부터 각 분쟁당사국이 2명의 재판관을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제3국인인 전문가 명부로부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각 분쟁당사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2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는 제3국인 재판관이 특별중재재판소의 소장이 된다.<sup>105)</sup>

소송절차의 개시를 통고 받은 타방 당사자에 의하여 그 통고수령 후 30일 이내에 재판관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중재재판소 소장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어느 개인 또

103) 김부찬, '해양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28쪽.

104)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1조.

105)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3조 (a) 내지 (d).

는 국가로 하여금 타방 분쟁당사자측의 재판관 또는 재판소 소장을 선임해 주도록 합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UN사무총장이 그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임명을 하여야 한다.<sup>106)</sup>

전문가명부는 어업분야는 UN食量農業機構(FAO),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의 분야는 UN環境計劃(UNEP), 해양과학조사는 政府間 海洋學委員會(IOC, 항해분야는 國際海事機構(IMO)에 의하거나 또는 개개의 경우 이러한 기구, 계획 또는 위원회가 동 기능을 위임하는 적절한 관계 보조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유지된다. 당사국은 위의 전문가명부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를 각 분야마다 2명씩 지명할 수 있는데, 이들 전문가는 각 분야의 법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확립되고, 그 공정성과 성실성에 관하여 최고의 명성을 얻는 자라야 한다.<sup>107)</sup>

## 2) 특별중재재판 절차

특별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문제에 관한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특별중재재판절차가 개시되고 이 때 특별중재재판소는 앞서 중재재판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한다.<sup>108)</sup>

그러나 특별중재재판소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중재재판소는 중재재판소의 구성방법보다는 조정위원회 구성방법에 더욱 가깝게 되어있다. 그리고 특히 제8부속서 제5조에서는 특별중재재판소의 기능에 事實調查(제5조 제1항)와 분쟁해결을 위한 勸告提示(제5조 제3항)등을 첨가함으로써 조정에 유사한 특성을 아울러 갖게 하였다.<sup>109)</sup>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특별중재재판소로 하여금 그 관할권에 속하는 분쟁을 조사하고 그 분쟁을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106)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3조 (e).

107)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2조.

108)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4조.

109) 김영구, 앞의 책, 900쪽.



사실조사는 당사자간에 중국적인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sup>110)</sup>

## 제2절 ITLOS의 구성과 관할권

### 1. ITLOS의 구성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중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의 설치가 제도로 확립된 점이다. 이전의 해양분쟁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재재판 내지는 ICJ를 통하여 사법적 해결<sup>111)</sup> 피하여 왔으나 법원 구성과 절차진행의 비신속성, 비전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양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법원의 구성이 요망되어 왔다. 이러한 요망에 따라 특별법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논의되었던 國際捕獲法院制度이다. 이 법원은 戰時의 해상포획을 처리하기 위한 교전국 포획법원의 상부 기관으로서 설치될 것이 논의되었으나 법원에 적용할 해상포획법규의 통일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설치되지 못했다. 이후에 국제연맹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Shucking의 제안에 의해 International Waters Office를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국제연합에서도 국제법위원회가 대륙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인 중재제도를 제안하였으나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73년 8월 21일 제네바에 개최된 海低平和刊用委員會의 마지막 회기에서 제출된 미국의 분쟁해결제도에 나타난 초안상에 나타난 ITLOS창설안이다.<sup>112)</sup>

110)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4조 1항,2항.

111) J. G. Merrills, op.cit., p.289.199.

112) Umed State, Draft Articles for a chaoter on the Settlement of Disoutes, UN Doc. A/Ac.

이 제안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ITLOS와 海底法院이 이원화되었다가 다시 ITLOS으로 통합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였으나 결국 이 협약 제15장, 제11장 제5절 및 제6부속서에 걸쳐 그 설치가 확정되었다. 협약에 규정된 ITLOS은 그 당초의 의도가 해양과 관계되는 분쟁을 전문적이고 배타적으로 처리하는 특별법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諸國의 이해대립 등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해양분쟁에 대한 관할을 다른 3개의 법원과 공유하는 등 그 기능이 축소된 형태로 설치되었다.

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국제심해저기구 및 ITLOS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ITLOS의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1983년 3월 1회기를 시작으로 약 10년 간의 기간 동안 매년 2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준비위원회의 제4 특별위원회가 결의 I 제10항에 따른 ITLOS설립을 위한 실무적 조치에 관한 권고(report containing recommendations)의 작성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1차 판사의 선출은 제6부속서 제4조 3항에 따라 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 16일) 6개월 후인 1995년 5월 16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4년 11월 22일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1996년 8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잠정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UN사무총장은 1995년 3월 27일 각국으로 하여금 해양법재판소 판사후보를 지명토록 권고하였는바, 이 권고에 의거 협약 당사국인 각국은 33명의 후보를 지정 등록하였다. 이 후보 등록은 1996년 6월 17일 마감되었다. 1996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New York에서 소집된 제5차 당사국 회의에서 21명의 재판관이 선임되었다.<sup>113)</sup> ITLOS는 준비위원회 제4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법원규칙 초안을 토대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1996년 10월 1일부터 그 정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

138/97(1973).

113) 1996년 8월 2일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에서, 우리나라 박춘호 교수가 9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선임되어 재선활동중 2008년 11월 별세하고 후임으로 백진현 교수가 선출되어 고 박 전재판관의 잔여임기인 2014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5명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및 레바논 후보가 각각 선임. 한국과 일본 국적 재판관은 임기 9년, 중국은 6년, 인도와 레바논이 각각 3년으로 되었다.

해양법협약은 심해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TLOS내에 海底紛爭裁判部를 두었는데, 이 재판부는 ITLOS에 설치된 하나의 部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양법법원에 대하여 독립적 위치를 차지한다.

ITLOS는 공정하고 성실하다는 훌륭한 평판을 갖고, 해양법 분야에 공인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발된 독립된 자격의 2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sup>114)</sup> 판사의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협약은 보다 확실히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구성에 복잡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의 21명의 판사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법률체계를 대표할 수 있고, UN 5개 지리적 그룹에서 최소 3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는 자기 나라국적의 판사를 1명 밖에는 갖지 못하며, 이에 따라 법원 내에서 2개국 이상의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그가 일상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판사의 선출을 위하여 본 협약 당사국은 각 2명 이하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들 후보로부터 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제1차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최초의 선거는 UN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2/3의 출석과 2/3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제1차 이후의 판사의 선임은 당사국회의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른다.<sup>115)</sup>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1차 선거에서 선임된 판사 중 7명은 3년 후에, 다른 7명은 6년 후에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매 3년마다 7명씩의 판사가 다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1차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중 3년 또는 6년 임기의 판사를 결정하는 것은 UN사무총장이 실시할 추천으로 정한다.<sup>116)</sup>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하며,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재판소는 서기를 둔다. 그리고 필요한 다른 직원을 둘 수 있다. 재판소장과 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sup>117)</sup>

---

114)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2조.  
115)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4조.  
116)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5조.  
117)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2조.

ITLOS은 필요한 경우 여러 형태의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다.<sup>118)</sup> 재판부는 通常的인 裁判部와 特別裁判部 및 해저분쟁을 배타적으로 다루기 위한 海底紛爭裁判部로 이루어지는데, 해저분쟁 재판부는 선출에 의해서가 아닌, ITLOS 판사 다수에 의해 선택된 11명으로 구성된다. ITLOS 규정 제14조는 海底紛爭小裁判部 설치를 강제사항으로 하고 있다. ITLOS 규정 제35조 2항은 해저관리 기구 총회가 소재판부 판사의 선택에 있어서 적절한 지리적 분배와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에 관하여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인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판사 전원의 출석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판사의 定足數(quorum)는 11명인데 비하여 15명의 판사로 이루어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정족수는 9명이다.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는 성립원인에 따라 특별재판부(Particular category chambers), 임시재판부(Ad hoc chambers), 간이절차재판부(Summary procedure chamber)로 나뉘어진다. ITLOS 규정 제15조는 特別小裁判部로 명명하고 특별소재판부로 하여금 본 사건의 특별한 영역을 다루는 소재판부를 설치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동규정 제15조 3항은 ITLOS가 매년 간이절차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ITLOS 규정 제36조는 해저분쟁소재판부로 하여금 협약 제188조 1(b)에 따라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부 자체를 대체하기 위한 臨時(ad hoc) 小裁判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특별재판부(Particular category chambers)는 법원이 특별한 범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설치하는 재판부로서,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3명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2명이 ad hoc 판사일 수 있고, ITLOS 판사는 1명밖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있다.

둘째, 임시재판부(Ad hoc chambers)는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부탁된 특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판부로서,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여기서도 ITLOS 판사는 1명만 포함되는 경우도

---

118)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5조.

생길수 있으며, 특별재판부의 판결은 ITLOS의 판결로 간주된다.

셋째, 간이절차 재판부(Summary procedure chamber)는 ITLOS가 매년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재판부로서, 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러한 정규판사 이외에 특정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판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2명의 교체판사(alternate)가 선출된다. ITLOS 판사는 자국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전원재판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국 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임시판사가 정규판사를 대체할 수 있다. 판결을 위한 정족수는 3명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Gulf of Maine 사건에서 초래되었던 문제점을 피해보려는 시도에서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sup>119)</sup>

臨時判事(Ad hoc Judge)制度는 한 국가가 ITLOS의 분쟁당사국이 된 경우에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판사로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권리에 따라 법원이 분쟁을 심리하는 중에 일방당사자의 국적을 갖는 판사를 포함시킬 경우, 타 당사자도 자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판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선출된 판사가 임시판사이다. 분쟁당사자가 모두 자국적의 판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양자는 각기 임시판사를 선출할 수 있다.

## 2. ITLOS의 관할권

지금까지 국제해양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ITLOS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적 측면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ITLOS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의 형식적인 부분과 동시에 내용적인 부분 즉 ITLOS가 내리는 판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ITLOS가 판단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는 ITLOS의 관할권에 의해

---

119) 문지혜, '국제법상 ITLOS의 지위와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1쪽.

결정되며, ITLOS의 관할권의 범위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ITLOS의 관할권에 대한 이해는 ITLOS가 국제법상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도 직결된다.

전통적으로 관할권은 그 분쟁의 대상과 관련된 물적관할권과 분쟁의 주체인 인(人)과 관련된 인적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ITLOS의 관할권의 내용 역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의 당사자와 분쟁의 내용에 따라 인적관할권과 물적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따른 접근은 이론적으로 ITLOS의 관할권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재판부가 행사하는 관할권에 대한 이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해당분쟁에 대한 재판의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를 결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20)</sup> 아래에서는 ITLOS의 관할권 범위를 인적관할권, 물적관할권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ITLOS의 인적관할권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인적관할권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6부속서에 재판부와 심해저위원회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ITLOS는 비국가실체의 소송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국제분쟁해결기관과는 달리, 광범위한 인적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쟁을 ITLOS가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국제법상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분쟁해결기관의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과 태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TLOS는 다른 국제분쟁해결기관과는 달리 비국가실체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ITLOS의 인적관할권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가

---

120) 문지혜, '국제법상 ITLOS의 지위와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9쪽.

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용어는 바로 당사국(State Party)이라는 용어이다, 이는 ICJ은 그 규정 제34조에서 국가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대비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적관할권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2항에서는 동 협약에 구속될 것을 합의한 국가 외에도 동협약 제30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체들도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EU와 같은 국제조직도 포함된다.<sup>121)</sup>

ITLOS 규정 제20조 제2항에서는 제XI부속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 혹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재판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부속서 제XI부속서상의 당사국이외의 주체란 ITLOS 규정 제37조와 함께 해석하여 볼 때 심해저분쟁재판부의 경우에 당사국, 국제해저기구 및 기타 실체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기업, 국영기업, 자연인 및 법인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sup>122)</sup> 심해저뿐만 아니라, 어업, 환경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가 이외에 주체가 이와 관련된 국제법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의를 제공한다.

ITLOS가 그 인적관할권을 국가 및 비국가실체에게로 확대함에 따라 일견 ITLOS의 인적관할권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협약상 다른 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잠재적인 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ITLOS 규정 제20조의 해석에 따라 인적관할권의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 ITLOS 규정 제20조에서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ITLOS에 부여하는 기타의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에 당사국이외의 실체가 ITLOS에 사건을 부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 협약 제288조 2항과의 비교에서 ‘국제적인 협정’의 주체이다. 제 309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실체들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약에 가입할 능력

121) Tullio Treves,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d. by Hugo Caminos, Law of the Sea, Ashgate, 2001, p.113.

122) Gudmundur Erikss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ar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p.114-115.

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나 자연인, 혹은 법인 및 기타 실체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동 협약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123)</sup> 이러한 점은 국제 사회에서의 비정부기구,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실체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ITLOS가 비국가실체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었으나, 국제적 현실에 의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해저분쟁재판부는 심해저의 문제에 대한 배타적관할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도 가장 넓은 인적범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해저 분쟁위원회의 관할권을 고려한다면 ITLOS의 관할권은 전술한 것보다 더욱 확장된다.<sup>124)</sup> ITLOS 규정 제37조에 따라 심해저분쟁위원회의 인적관할권은 국제해저기구, 기업, 국영기업 그리고 당사국의 국적 혹은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실효적으로 통제를 받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포함한다.<sup>125)</sup>

## (2) ITLOS의 물적관할권

ITLOS의 물적관할권은 보편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ICJ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작다. 그러나 해양법 역시 그 자체만으로도 어업, 환경, 자원개발등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법의 개별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관성을 고려해본다면, 실질적으로 ITLOS의 관할권은 상당히 넓은 분야에 걸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TLOS의 물적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 및 규정 제21조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조문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ITLOS의 물적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수락과 선언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ITLOS는 협약의 해석과 적

123) Gudmundur Erikss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p.115.

124) Joseph Akl, "the Seabed Disputes Chambe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Law and Practice*, p.81.

125) Joseph Akl, "the Seabed Disputes Chambe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Law and Practice*, p.82.



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나 ITLOS의 물적관할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법과 관련된 혹은 해양법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양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분쟁의 경우에도 해당분쟁의 당사자가 ITLOS에 의한 해결에 합의, 기탁하는 경우, ITLOS는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sup>126)</sup> 학자에 따르면 규정 제21조에서는 관할권의 합의가 동협약과 관련될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해양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면, ITLOS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Mensah 재판관은 해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협정은 ITLOS의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해양과 관련되지 않은 분쟁 역시 ITLOS에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상의 ‘국제적 합의’와 규정 제21조상의 ‘기타의 합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분쟁이 목적에 부합하는 분쟁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ITLOS의 관할권은 확장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ITLOS의 관할권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은 본안판단에 앞서 관할권에 대한 판단 시간의 소요 및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ITLOS가 자랑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진행 및 판단의 적합성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협약에서 예견하지 못한 미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약의 조문이나 규정에 대한 해석의 논란 혹은 개정의 필요없이 ITLOS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운영상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27)</sup> ITLOS의 관할권이 한정적, 열거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TLOS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ITLOS의 물적관할권의 범위판단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126)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 2항.

127) 문지혜, "국제법상 ITLOS의 지위와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53-54쪽.

ITLOS의 물적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된다. 우선 당사국이 ITLOS를 분쟁해결기관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sup>128)</sup>에 ITLOS가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외에 유엔해양법협약은 ITLOS의 물적관할권과 관련하여 제297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제298조에 의해 선택적으로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두가지 부분으로 관할권의 제한되는 범위를 한계짓고 있다.

제297조에 의한 관할권의 제한은 연안국의 관할권과 주권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법적 고려에 기인하였다.<sup>129)</sup> 이에 따라 제1항에서는 EEZ와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관할권의 행사 혹은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은 제15부 2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주권적 권리의 보장과 관련된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는 구속력 있는 절차를 수반할 수 있다.<sup>130)</sup>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권적 권리’의 범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념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제2항 및 어업과 관련된 제3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98조에서는 당사자에 의한 강제관할권으로부터의 선택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는 선언에 의해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만 혹은 권원, 비상업적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활동을 포함한 군사활동, UN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와 관련된 경우에 물적관할권의 예외로 들 수 있다.<sup>131)</sup> 물적관할권의 한계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당사국들은 ITLOS의 강제관할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주권적 권리’의 범위에 대한 규범 및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심해저분쟁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성격중 하나는 심해저 영역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

---

128)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129) Francisco Ozanan Gomes Roch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iversity of Hamburg, 2001, p.64.

130) Francisco Ozanan Gomes Rocha., 앞의 책, 2001, p.65.

131) Francisco Ozanan Gomes Rocha., 앞의 책, 2001, p.67-68.

쟁에 대한 강제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심해저분쟁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의 범위는 동협약 제187조 이하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국간의 분쟁, 당사국과 해저기구간의 분쟁, 계약상의 분쟁, 기구의 책임에 관련된 분쟁등 6가지 범위이다. 그러나 심해저분쟁재판부의 물적관할권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심해저분쟁재판부의 강제관할권은 특정한 경우의 분쟁의 경우에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며, 다른 분쟁해결방법이 당사국들에게 제공된다. 나아가 동협약의 규정은 특정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재판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 제5장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및 개선방안

### 제1절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 1. Camouco호 사건<sup>132)</sup>

##### (1) 사실관계

Camouco 호는 파나마에 임시 등록된 어선으로 등록기간은 1988년 9월 21일부터 2002년 9월 20일까지였고, 소유주는 파나마에 등록된 MercePesca (S.A)사였다. 이 선박은 파나마 정부로부터 남위 20°~50°, 서경 20°~80°사이의 남대서양 공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대한 저연승어업 (longline bottom fishing) 허가를 받고 있었다.

Camouco호는 1999년 9월 16일 해당 수역에서의 저연승어업을 위해 나미비아의 Walvis Bay를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동년 9월 28일 Crozet섬 북쪽 EEZ에서 프랑스 프리깃함 Floreal호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았다. 이는 Camouco 호가 Crozet 섬 EEZ 내에서 투승하고 있는 장면이 플로레알호 헬리콥터에서 목격되어 Camouco호에 통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하지 않고 도주하자 정선명령을 내린 후 행해진 것이었다. 플로레알호의 위반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amouco호, 어획물, 항해 및 통신장비와 선박 및 선원의 서류를 압수하고, 프랑스 해군의 감시 하이 웨이닝 갈레항으로 1999년 10월 5일 예인되었다.

- a. 프랑스 EEZ에서 불법어업을 행한 점
- b. 선내에 6톤의 이빨고기를 적재하고 있으면서도 EEZ 진입신고를

---

132) ITLOS, Case No. 5 The "Camouco" Case (Panama v. France). Judgment of 7 February 2000.

행하지 않은 점

c. 선박표지를 은폐한 점

d. 당국의 승선검색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1999년 10월 7일 프랑스지방해양청은 위반조서를 바탕으로 선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Camouco호(20,000,000프랑)와 어획물 7,600kg(380,000프랑)을 압수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선장은 세인트테니스 지방재판소 감시하에 놓였으며, Camouco호 유지를 위한 선원 4명을 제외하고 모든 선원은 1999년 10월 13일 석방되었다. 다음날 본 사건은 세인트파울 제1심 재판소에 회부되었으며, 재판소는 Camouco호의 나포를 확인하고 총액 2,000만 프랑을 현금, 지불보증수표 또는 어음 형식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선박의 석방명령을 내렸다.

세인트파울 제1심 재판소 판결에 대해 Merce-Pesca사 및 Camouco호 선장은 재판소가 결정한 담보금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및 제 29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고, 나포조서에 의해 압수된 물품의 신속한 반환과 담보금의 액수 감액을 위한 항소를 10월 22일 제기하였으나, 세인트파울 제1심 재판소는 12월 14일 항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후 동 결정에 대한 상소가 세인트테니스 항소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00년 1월 17일 파나마는 프랑스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에 의거 ITLOS에 Camouco호 및 그 선장의 조기석방을 위한 재판을 신청하였다.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ITLOS에 본 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양 당사국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a. 담보금 또는 재정적 보증 예치 여부가 협약 제73조 및 제 292조에

따른 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신청에 영향을 주는가

b. 재판신청 지체가 협약 제292조 적용에 영향을 주는가

c. 협약 제295조의 국내구제완료 원칙이 제292조에 따른 조기석방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가

프랑스는 재판신청 지체와 관련하여 협약 제292조에 따른 조기석방 신청은

‘신속한 석방’이라는 개념이 내제해 있는 것으로서 Camouco호 억류후 3개월이 나 지난 시점에서 재판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점은 이 ‘신속한’이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본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나마는 협약 제 292조는 재판신청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가 주장한 ‘지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재판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이 2,000만 프랑으로 확정된 때에 ITLOS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내구제절차완료 조건에 대하여 프랑스는 현재 본안이 세인트데니스 항소재판소에 계류 중임을 강조하고, 협약 제 29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구제절차 완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29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파나마는 프랑스의 주장을 부정하고, 국내법절차개시가 협약 제292조에 의한 제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우선 담보금 또는 재정적 보증 예치 여부가 협약 제 292조에 의한 재판신청의 선행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대해 앞서 판결한 Saiga호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였다. 또한 재판신청 지체와 관련한 프랑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협약 제 292조는 원고국이 주장한 것처럼 재판신청에 특정기간을 두지 않으며, 제1항의 10일이라는 기간은 당사국간의 합의 등 재판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이지 억류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재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구제절차 완료조건과 관련해 협약 제292조는 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이라는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독립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협약 제295조의 국내구제절차 완료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파나마는 재판신청서에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2,000만 프랑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1,300만 프랑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프랑스에 압수된 적하물의 가격(35만 프랑)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박하여 프랑스는 당국이 Camouco호와 Merce-Pesca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0만 프랑으로, 국내법정에서

결정한 2,000만 프랑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재판소는 Saiga호 사건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은 균형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위법사항의 중대성, 억류국이 국내법상 부과했거나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억류된 선박과 압수된 적하물의 가치, 억류국이 부과한 담보금액 및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Camouco호 선장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500만 프랑인 점과 전문가 증언에 따른 Camouco호 가치가 3,717,571프랑인 점, 그리고 프랑스 당국에 의해 몰수되어 매각된 Camouco호의 적하물의 가치가 38만 프랑인 점을 고려해 프랑스 당국이 부과한 2,000만 프랑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재판부가 부과한 담보금의 합리성 여부와 함께 재판소는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위해 예치되어야 할 적정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프랑스는 재판소가 결정한 담보금 또는 재정 보증이 2,000만 프랑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담보금의 총액은 보증수표 또는 어음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금은 800만 프랑으로 하며, 이는 은행보증 형태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형태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3) 평석

Camouco호 사건은 ITLOS에서 두 번째로 판결한 조기석방 관련 사건으로, 그 사건 판결문에서 이 전의 Saiga호 사건 판결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 예치가 협약 제292조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국내구제절차 완료 규정 및 재판신청의 지체문제에 관하여, 두 사항 모두 협약 제292조 실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재판소는 적정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이 위법사항의 중대성, 억류국이 국내법상 부과했거나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억류된 선박 및 압수된 적하물의 가치 억류국이 부과한 담보금액 및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였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33)</sup>

## 2. Monte-Confurco호 사건<sup>134)</sup>

### (1) 사실관계

Monte-Confurco호는 세이셸공화국 국적의 어선으로서 선주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된 Monte Shipping Corporation사이다. 세이셸 등기소의 증명서에 따르면 Monte-Confurco호는 공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어업면허(No.710)을 발급받고 있었다.

Monte-Confurco호는 2000년 8월 27일 남방해역에서의 연승어업을 위해 출항한 이후 마지막 항차의 조업을 위해 국제해역인 윌리엄뱅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수역을 피하고 거리상 가장 가까운 프랑스령 Kerguelen제도 EEZ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2000년 11월 8일 Monte-Confurco호는 프랑스 구축함 Floreal호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게 되었고, Floreal호 선장은 본 선박이 EEZ 진입사실과 적제 된 어획량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불법어업활동의 혐의가 있으며, 어로행위 감시를 위한 당국의 조사에 회피하거나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웨이닝 길레항에 호송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지방해사청장은 어획물 158t(9,000,000프랑), 어로장비(300,000프랑), 그리고 선박과 설비 등(15,000,000프랑)을 압류함과 동시에, 선박을 계선시키고 세인트파울 소재 제1심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선장을 억류하고 선박 나포를 결정하였으며, 선박 및 선장에 대한 담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총 56,400,000프랑을 담보금을 지불한 후 석방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세이셸공화국은 2000년 11월 27일 프랑스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ITLOS에 Monte-Confurco호와 선장의 조기석방을 신청하였다.

---

133) 안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조기석방 재판관행과 담보금 산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1쪽.

134) ITLOS, Case No. 6 The "Monte-Confurco" Case (Seychelles v. France). Judgment of 18 December 2000.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세이셸공화국 측은 프랑스 세인트파울 제1심법원에서 판결한 담보금(56,400,000프랑)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2조 제2항 및 제292조에 따른 “합리적인” 담보금 혹은 기타 재정적 보증이 아니므로, ITLOS는 Monte-Confurco호의 석방을 위한 적정 담보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확정해야 하며, 억류중인 선장은 아무런 보증 예치 없이 석방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측은 프랑스 법원이 정한 담보금은 동 사건의 모든 정황과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한 것이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즉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ITLOS는 합리적인 담보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억류국의 국내법과 국내법원의 결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담보금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협약과 함께 다른 국제법 규칙 및 재판소의 선례(Saiga호 사건과 Camouco호 사건)에서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요소들에 의존하여 판결하였다. 즉, 재판소는 동 사건의 위반사항을 어족자원 보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프랑스 국내법상 벌칙의 범위와 실제 프랑스 국내법원이 부과한 벌금의 일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 법원이 결정한 담보금은 협약 제292조에 따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세이셸공화국은 프랑스 법원이 부과한 담보금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위치통보 불이행에 대한 벌금 200,000프랑과 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프랑스령 EEZ 해상에 머물고, 그 기간 동안 추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획물 4t에 대한 벌금 2,000,000프랑을 합산한 2,200,000프랑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 ITLOS는 이와 같은 세이셸공화국 주장을 기각하고 억류국에 압류된 158본 어획물의 금전적 가치인 9,000,000프랑과 별도의 재정보증을 합한 18,000,000프랑을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으로 정하였으며, 이 담보금이 예치된 즉시 선박과 선원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3) 평석

Monte-Confurco호 사건 판결에서 ITLOS는 억류국이 부과한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결한 근거의 하나로서 프랑스 법원의 사건본안 심의 내용이 재판소가 지닌 정보와 상이하고, 그러한 정보는 사건 판결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제3항에 언급된 ‘사건본안에 대한 침해 없이’라는 내용과 대립되는 것이긴 하지만, 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범위 내에서는 연안국의 국내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사건본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sup>135)</sup>

### 3. Grand Prince호 사건<sup>136)</sup>

#### (1) 사실관계

Grand Prince프린스호는 벨리즈의 국제상선해양등록소에 임시등록된 어선으로서 선장은 스페인 국적의 사람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2월 초 남인도양 공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시험적 차원에서 랍스터를 어획하기 위해 출어한 이후 2000년 12월 26일 프랑스령 Kerguelen제도 EEZ 내에서 프랑스 프리킧함 Nivose호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았다. 승선검색 결과 Grand Prince호는 동 EEZ 내 진입 시 프랑스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동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프랑스 당국에 의해 세인트폴 제1심법원에 기소되었다.

프랑스 법원은 선박의 나포를 결정하고 석방을 위한 보석금 또는 재정 보증은 선박의 가치와 선장에 부과될 벌금 및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합산한 11,400,000프랑으로 결정하였다. 세인트폴 제1심법원의 판결이 있는 후 프랑스 형사법원에서도 선박과 장비, 어구 및 포획한 어류의 몰수를 명령하고, 선자에 대해 200,000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선장은 형사법원

135) 안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조기석방 재판관행과 담보금 산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4쪽.

136) ITLOS. Case No. 8 The "Grand Prince" Case (Belize v. France). Judgment of 20 April 2001.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세인트폴 제1심법원이 판결한 금액의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Grand Prince호 석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동 사건이 형사법원에 항소 중 이란 이유로 선박의 석방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벨리즈 측은 2001년 3월 16일 Grand Prince호의 조기석방을 위한 재판 신청서를 ITLOS에 제출하였다.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벨리즈는 재판신청서를 통해 세인트폴 제1심법원이 판결한 담보금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담보금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석방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EH한 제1심법원에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을 결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법원에서 선박과 장비, 어획물 등을 몰수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위배되는 일이며, 일종의 “법률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랑스 측은 이미 국내법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ITLOS의 재판관할권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ITLOS는 재판소가 본 사건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Grand Prince호의 임시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벨리즈를 선적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 (3) 평석

그랜프린스호 사건은 ITLOS에서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신청을 기각한 최초의 사건이다. 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양 당사국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sup>137)</sup>

---

137) 안지은, 앞의 논문, 36쪽.

#### 4. Volga호 사건<sup>138)</sup>

##### (1) 사실관계

Volga호는 러시아 선적의 연승어선으로, 선주와 선장도 러시아인이다. Volga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상업적 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증을 발급받고, 2002년 2월 7일 호주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호주해군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았다. 이 승선검색에서 Volga호의 불법어업사실 사실이 발각되어 나포된 이후 호주 어업관리법에 따라 Volga호의 일등항해사를 비롯한 선원 3명은 서부 호주 약식재판소에 기소되었고, Volga호(\$1,000,000)와 어구, 어로장비(총 A\$147.460)등은 모두 호주당국에 의해 몰수 되었다. Volga호에 적재되어 있던 어획물은 호주당국에 의해 A\$1,932,579에 처분되었고, 그 금액은 호주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호주 정부 사무변호사 신탁에 보관되었다.

호주 재판부에 기소된 선원들은 재판을 통해 각각 75,A\$000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또한 선박과 어획물, 그물, 어로장비 등의 석방을 위한 재판은 호주연방법원에서 그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법원은 선박, 연료, 윤활유, 어구의 가치와 호주 국내법에 의한 잠재적 벌금, 그리고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선박감시장비(VMS) 장착과 그의 완벽한 가동, 그리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A) 보존조치의 준수를 보장받기 위한 담보금을 합산한 A\$3,332,500를 선박과 기타 장비 석방을 위한 담보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Volga호 측은 호주가 요구하는 담보금은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담보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통신문을 호주어업관리청(AFMA)에 보내고, 2002년 12월 2일 ITLOS에 호주법원이 부과한 Volga호 선원과 선박 등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의 적절성 평가와 합리적인 담보금 결정을 부탁하는 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138) ITLOS. Case No. 11 The "Volga" Case (Russian Federation v. Australia). Judgment of 23 December 2002.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러시아는 재판신청서에서 호주법원이 정한 담보금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맞서 호주는 당국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는 선박과 기타 어로방비의 가치,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잠재적 형벌,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한 국제적 관심정도 등으로, 이는 호주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고려되어야 할 의무 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양 당국의 주장에 대해 ITLOS는 호주법원이 정한 담보금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앞서 판결한 Camouco호 사건과 Monte-Confurco호 사건에서 지적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소는 가장 먼저 Volga호가 행한 불법어업행위는 호주 법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중대한 사항임을 밝혔다. 또한 호주법원에 의한 담보금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하였는데, 첫째 Volga호와 연료, 기타 어로장비 등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A\$1,920,000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292조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선원들을 상대로 서부호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절차에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벌금 412,500호주달러에 대하여 재판소는 이미 세명의 선원이 동 법원 항소판결에 따라 담보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관하여 재판소가 추가적인 담보금 또는 그러한 담보금의 합리성을 판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다. Volga호 석방을 위해 VMS장착과 CCAMLR 보존조치준수를 보장받기 위한 담보금 1,000,000호주달러에 대하여 재판소는 그러한 석방 조건은 “선행보증(good behavior bond)”으로서 비금융적 성격의 조건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2항과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담보금 또는 적정재정보증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 또는 담보금란 금융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호주법원이 판결한 Volga호 석방을 위한 조건과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금은 합

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러시아 측은 재판신청서에서 호주법원에 의한 담보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석방 담보금은 A\$500,00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재판소는 호주법원에 의한 담보금 중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1,920,000 호주달러가 Volga호 및 연류, 기타 어로장비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담보금이 예치되는 즉시 Volga호를 신속히 석방하도록 명령하였다.

### (3) 평석<sup>139)</sup>

ITLOS의 판결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호주가 부과한 선행보증인 VMS 장착요구는 비금융적 성격의 보증으로서 재판소에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재판소가 적정담보금 또는 재정보증의 성격을 금융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 5. Juno Trader호 사건<sup>140)</sup>

### (1) 사실관계

Juno Trader호는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 국적의 냉장운반선으로서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 정부로부터 영구적인 냉장건조물 운송허가를 받고 있었다. 이 선박은 2004년 9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동 선박의 자선(sister ship)인 Juno Warrior호가 모리타니 EEZ에서 조업한 어획물과 미끼를 인계받고, 목적지인 가나를 향해 항해하던 중 기니비사우 EEZ에서 기니비사우 해경함정에 의해 나포되었다. 나포과정에서 기니비사우 해경에 발포로 인해 Juno Trader호 선원 한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그 선원은 Esperanze del Mar병원선으로 옮겨져 구

139) 안지은, 앞의 논문, 40쪽.

140) ITLOS. Case No. 13 The "Juno Trader"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Bissau). Judgment of 18 December 2004.

급조치를 받고 라스팔마스로 후송 되었다.

나포된 Juno Trader호는 2004년 9월 27일 기니비사우의 비사우 항으로 예인 되었으며, 선박과 선원은 억류되었다. 이 후 기니비사우 당국 조사팀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제해사통제위원회(IMCC: Interministerial Maritime Control Commission)는 Juno Trader호 선내에 어획물과 항해일지 혹은 기록물이 부재하다는 점과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어획물 대부분이 자국 EEZ내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인 점 등을 근거로 Juno Trader호가 당국의 허가 없이 기니비사우 EEZ 내에서 어획물을 옮겨 싣고 이동하였으며, 불법어업을 행한 흔적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IMCC는 기니비사우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어획물은 기니비사우에 재 하역할 것과 선박에 대하여 175,398유로의 벌금을, 선장에 대해서는 8,77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Juno Trader호 선주는 2004년 11월3일 8,770유로의 벌금을 지불하였고, 추가로 동 월 10일 선박의 석방을 위해 50,000유로의 담보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며칠 뒤인 동 월 8일 지급 보증장을 제출하였으나, 기니비사우 측은 담보금이 예치된 즉시 선박과 선원의 석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ITLOS에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의 재판신청에 대해 기니비사우는 재판신청 당시 원고국이 Juno Trader호의 선적국이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며, ITLOS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다. 즉, Juno Trader호는 기니비사우 IMCC에서 정한 담보금 미납부로 인해 몰수되었고, 이에 따라 그 국적이 기니비사우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국은 IMCC의 결정 이행은 비사우 지방법정에 의해 연기되었으며, 선박의 석방을 위한 50,000유로의 담보 보증장을 제출한 당시에는 선박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국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ITLOS는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의 주장대로 비사우 지방법정에서 IMCC 결정 이행을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니비사우는 선박 몰수 등을 포함하여 벌금 미납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Juno Trader호의 선적국이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보고,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는 선원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을 지불하였으나 선원들은 여전히 기니비사우에 억류되어 있으며, 선박을 위한 담보금 일부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의 석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기니비사우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73조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니비사우는 선박의 몰수로 인한 국적변경사항과 합 RP 선원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년 12월 7일과 15일 모든 선원의 여권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ITLOS는 실제로 억류국의 적절한 국제법절차에 따라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선원들이 여전히 비사우항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어 어떠한 담보금 없이 모든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선박에 대해서도 그 적재물을 포함하여 석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ITLOS는 피고국이 제 73조 제2항에 대하여 불응하였다는 선언과 함께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한 합리적인 담보금을 산정하였다. 그러한 담보금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요소로서 재판소는 Camouco호 사건 및 Monte-Confurco호 사건에서 적용한 재판기록을 언급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양 당사국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주장된 위법사항의 중대성과 선박, 적재물(어획물)의 가격과 함께 억류기간 동안 어획물의 보관을 위해 사용된 선박 냉장창고 비용도 합리적인 담보금 산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며, 선박 몰수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평가하여 재판소는 선원의 석방을 위해 이미 예치



되었던 담보금 8,770유로와 함께 300,000유로의 담보금을 추가로 정하며 담보금을 예치하는 즉시 선박과 선원을 석방하고, 선박의 석방을 위해 제공하였던 50,000유로의 담보보증서는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다에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 (3) 평석

Juno Trader호 사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ITLOS가 적정 담보금 또는 재정 보증 산정 기준으로 억류국에서 자국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시한 담보금을 일부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억류국이 합리적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기타 사건 정황에 비례하는 담보금을 제시한 경우, 그 금액은 재판소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담보금 산정 기준요소로서 이전 사건의 선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억류기간 동안 사용된 선박기기의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담보금을 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41)</sup>

## 6. Hoshinmaru 사건<sup>142)</sup>

### (1) 사실관계

2007년 6월 1일 캄차카 동쪽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국적, (Ikeda Suisan) 소속 연어유자망어선 제88 Hoshinmaru(173톤, 선원17명, 선가 18,843,000엔, 러시아 EEZ 어업허가 1007. 5. 15 ~ 7. 30)가 러시아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어 2007년 6월 3일 캄차카항으로 예인되었다. 이 어선의 혐의는 불법조업 및 국경 침범으로, 연어 약 45,000kg을 불법 포획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수산자원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2007년 6월 6일

141) 안지은, 앞의 논문, 44쪽.

142) ITLOS. Case No. 14 The "VHoshinmaru" Case (japan v. Russian Federation). Judgment of 23 August 2007.

러시아에 합리적인 담보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 회신이 없었으며, 어선은 이미 캄차카항으로 예인되어 어획물의 하역과 검사가 행해지고, 선장은 2007년 6월 26일자로 불법조업과 국경침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본 측은 러시아 법원에서 본 사건이 계류 중인 2007년 7월 6일 ITLOS에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위한 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ITLOS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07년 7월 13일 러시아 법원은 선박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으로 25,000,000루블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 담보금은 선박 가치의 변경을 인해 22,000,000루블로 삭감되었다.

## (2) 주요 쟁점 및 ITLOS의 판결

ITLOS는 러시아의 국내법정에서 이미 담보금을 산정한 사실에 따라 일본의 재판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국내법원에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재판청구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분쟁에 대한 재판의 관할 범위를 산정 담보금의 합리성을 평가하거나 사건 정황에 알맞은 합당한 담보금 산정으로 좁히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292조에 의거 본 재판신청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러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담보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조건으로 Hoshimnaru를 조기에 석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재판소가 억류국 국내법절차에 따른 적정 담보금 산정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국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에 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러시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또한 러시아 법원이 뒤늦게 판결한 22,000,000루블의 담보금에 대해 재판소는 선박과 불법어획물의 가치 및 행정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과 함께 위법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 최대 벌금으로서 22,000,000루블의 담

보금을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러지 못하다고 보았다.

ITLOS는 담보금 산정에 관하여 기존의 산정 기준, 그 중에서도 위반사항의 중대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Hoshinmaru의 어획물에 대한 불법신고 사실은 국제적 수산자원관리 차원과 IUU어업 규제도상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ITLOS는 2007년 8월 6일자로 러시아에 10,000,000루블(약\$392,000)의 담보금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포함하여 Hoshinmaru 및 그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43)</sup>

위 재판 결과의 이행으로 2007년 8월 15일 선박 소유주는 선박 및 선원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담보금을 지불하였고, 2007년 8월 16일 선박과 선원이 석방되어 2007년 8월 19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이는 ITLOS 판결이 있은지 10일 이후에 이행된 것으로서 재판소는 재판소 판결에 따라 양 당사국이 판결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였다고 선언하였다.<sup>144)</sup>

## 제2절 향후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는 다양한 해결 구조와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국제해양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분쟁해결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달과정 속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상, 구조상의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서의 망라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많은 해양분쟁이 강제해결에서 제

143) ITLOS, Press Release 112, 6 August 2007.

144) ITLOS, Press Release 114, 17 August 2007.

외되어 있다.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관련하여 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에서 나오는 모든 해양분쟁이 실질적으로 강제절차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양경제획정, 군사활동,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조업활동 UN헌장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서면으로 강제절차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자체가 강제해결을 위한 해양법협약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명문으로 강제절차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의 강제해결을 위한 법원선택을 병행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기관들에 부여된 주요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법률적인 분쟁과 비법률적인 분쟁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선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특히 특별중재법원의 역할에 대해 다른 법원과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박과 승무원의 신속한 석방에 관한 규정은 어선의 억류가 부당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 국가의 어업산업의 손해를 경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EEZ에서 조업에 관한 연안국의 법규의 내용과 이러한 법규가 집행되는 방식의 연관성을 볼 때 분쟁은 연안국에 의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범집행활동과 관련이 있고 억류된 선박이나 나포된 승무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러한 기본적 문제들과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서 선박의 신속한 석방을 요청하는 명령만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나 보석금 혹은 담보의 액수에 관한 논쟁에서 사법적으로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ITLOS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예산상의 운영문제와 재판부 구성시의 투명성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에 있어 독립성은 국제재판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ITLOS는 재정을 회원국의 예산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즉 ITLOS의 지출은 당사국 및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지급되며 해저기구에 의한 지원은 재판에서 해저기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체제는 ITLOS가 조약상의 기구라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예산지원액의 다소에 따라 재판정에서 영향력이 비례되는 우려를 내포하며, 당사국들의 지원없이는 ITLOS가 운영될 수 없으므로 예산지원국과의 관

계와 재판의 독립성, 운영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동기구의 예산운영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쟁 당사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의 여러 분쟁해결방법 중에서 중재재판을 주로 선호하는 것은 비용과 같은 고려사항 이외에도 당사자가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인데,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때 분쟁해결기관인 ITLOS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재판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내외부적 장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ITLOS의 판단범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ITLOS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활동범위는 제약되며, 다른 기타의 국제분쟁해결기관도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사례를 본바와 같이 ITLOS가 실제로 다룬 사건 중 대부분이 ‘즉시석방’으로 불리는 사안들로 비합법적, 불법적인 어업활동으로 인한 선박의 억류와 선원의 체포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분쟁해결기관과 비교하여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 분쟁사례가 편중되어 해양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 판단을 통한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부탁된 분쟁의 대부분은 제3세계국가간의 어업분쟁 혹은 제3세계국가 대 선진국의 어업분쟁이었고 사건성격도 어업활동과 관련된 선박과 선원의 즉시석방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단순히 특별한 권한만을 사용하는 판단기관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분쟁의 해결을 ITLOS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ITLOS의 존재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분쟁의 기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6장 요약 및 결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전이며 現국제법의 한 이정표가 되었다. 다만 동 협약 상에 나타난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존재는 다른 측면에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킬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비하고 제도화 함과 아울러 동 협약의 통합적 해결과 실효적 운용을 확보하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법상의 분쟁은 해양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하여 또는 이를 규율하는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하며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에 관련된 분쟁과 국가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 관련된 국가활동에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있다. 국가관할수역 내의 활동에 기인하는 국제해양분쟁과 관련하여 특히 오늘날 주요한 관심사는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인데 영해와 국제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무해통항권 및 통과통항권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이용에 관해서는 외국선박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이러한 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국제해양분쟁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해결방안과 사법적 해결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총회는 1970년에 채택한 결의안에서 “그러므로 국가들은 교섭, 사실조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재판, 지역적 기구나 협회에 의한 해결, 또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가들 사이의 국제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교섭은 통상적으로 국가간 분쟁발생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며, 국제분쟁의 당사자들이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들이 뛰어넘지 못한 난국을 돌파하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제3자의 이런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은 다른 대화 채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단순

히 중단된 교섭을 다시 계속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 제3자가 하는 이런 역할을 ‘주선(good offices)’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제3자의 역할이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개입을 ‘조정(conciliation)’이라고 한다. 제3자의 역할이 ‘주선’과 ‘조정’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仲介’이다. 사실조사는 국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조사되도록 하기 위해, 중재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특별한 합의를 통해 만든 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당사국이 상설 혹은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에 의한 모든 형태의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수단을 통해 분쟁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당사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방안의 마련을 시도하며,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신의 견해도 표명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국제해양분쟁의 정치적 해결방안 중 중재만큼 중요하고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정치적 성격의 국제기관에 부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 :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분쟁 당사국 사이의 직접 만남을 즉 교섭, 중개, 조정 혹은 주선 등이 가능하다.

한편 범세계적 국제기구가 아닌 지역적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방안이 있는데 지역기구는 분쟁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 회원국들에게 사전 협의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특히 분쟁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기구의 회합을 통한 비공식적 접촉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위의 정치적 해결방안을 보완하는 사법적 해결방법은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중재재판, 사법재판, 지역적 사법재판이 있다. 중재재판은 臨時的 또는 常設的 仲裁法院에서 국제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재판을 하는 국제법상의 기관은 중재법원인데 여기에는 특별중재법원

과 상설중재법원이 있다. 常設仲裁法院은 국제분쟁을 재판하기 위하여 헤이그 협약에 의해 1901년에 설치된 常設의 중재법원을 말한다.

중재재판과 달리 직접 분쟁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해 구성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재판준칙으로 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확보되는 국제사법재판이 있다. ICJ는 재판 이외에도 총회·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勸告的 意見(avisory opinion)'을 부여할 수 있다.

지역적 사법재판이란 UN헌장과 국제법상의 지역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정치적, 사법적인 방법이 행해져 왔으며 해양분쟁의 다양성과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로 (i) 제6부속서에 의거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i) 국제사법재판소(ICJ), (iii) 제7부속서에 의거한 중재재판소 (iv) 제8부속서에 의거한 특별중재재판소를 규정하고, 체약국은 서명, 비준, 가입 시나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위 4가지 사법적 절차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함을 서면으로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의 설치가 제도로 확립되었고 ITLOS는 독립된 자격의 21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21명의 판사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법률체계를 대표할 수 있고, UN 5개 지리적 그룹에서 최소 3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권에 있어서도 다른 국제분쟁해결기관과는 달리 비국가 실체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ITLOS는 해양법과 관련된 혹은 해양법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양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분쟁의 경우에도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ITLOS에 의한 해결에 합의, 기탁하는 경우,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ITLOS의 성립과 활동을 통해 최근 분쟁해결사례를 보면 Camouco호 사건에서는 조기석방 관련 담보금 또는 재정보증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고, Monte-Confurco호 사건 담보금의 합리성을 재심의, Grand Prince호 사건은 이미 프랑스 국내법원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재판관할권 불성립으로 기각판결, Volga호 사건에서는 선원,선박의 조기석방 조건과 담보금 합리성여부 판결등 조기석방에 관련 분쟁해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는 다양한 해결구조와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국제해양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지만 다각도의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서의 망라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많은 해양분쟁이 강제해결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이다.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조업활동 UN헌장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서면으로 강제절차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자체가 강제해결을 위한 해양법협약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명문으로 강제절차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의 강제해결을 위한 법원선택을 병행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기관들에 부여된 주요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법률적인 분쟁과 비법률적인 분쟁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선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셋째, ITLOS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예산상의 운영문제와 재판부 구성시의 투명성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에 있어 독립성은 국제재판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ITLOS는 재정을 회원국의 예산지원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즉 ITLOS의 지출은 당사국 및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지급되며 해저기구에 의한 지원은 재판에서 해저기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사국들의 지원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ITLOS에게 있어 예산운영구조는 예산지원국과의 관계와 재판의 독립성, 운영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쟁 당사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의 여러 분쟁해결방법 중에서 중재재판을 주로 선호하는 것은 비용과 같은 고려이외에도 당사자가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때 분쟁해결기관인 ITLOS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재판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내외부적 장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ITLOS의 판단범위에 대한 한계에 관한 것으로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부탁된 분쟁의 대부분은 제3세계국가간의 어업분쟁 혹은 제3세계국가 대 선진국의 어업분쟁이었고 사건성격도 어업활동과 관련된 선박과 선원의 즉시석방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분쟁사례가 편중현상은 해양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 판단을 통한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특별한 권한만을 사용하는 판단기관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분쟁의 해결을 ITLOS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ITLOS의 존재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분쟁의 기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는 해양분야의 국제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국가진영의 이해관계를 극적으로 조화시킨 타협의 산물이다. 이 협약은 강제적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다자조약상 분쟁해결제도가 성취하지 못했던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법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범주의 분쟁을 강제적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선택적 예외를 허용하는 신축성으로 말미암아 각 당사국은 특정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성이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국제법학의 통일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탄력성을 내포하는 유엔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는 그 성격과 국제관계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논의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변화의 역사에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부산 : 진성출판사, 2000.
- 박준길 · 류병화, 「해양법」, 서울: 민음사, 1986.
- 류병화, 국제법Ⅱ, 서울 : 진성사, 1988.
- 이석용 외.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 해양수산부.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 : 일조각, 2003.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서울 : 도서출판두남, 2005.

### 2. 논문

- 김부찬, "해양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영구,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현대 국제판결: 그 기능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國際法研究 제8권 제1호, 2001.
- \_\_\_\_\_,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20년의 평가와 전망", 유엔해양법협약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2002.12.
- \_\_\_\_\_, "해양문제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상 제도의 고찰", 韓國海  
事法學會 法學研究 제3호 李俊秀博士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1.
- 김영호, "해양분쟁사례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태운, "연안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의 신속한 석방에 대한 ITLOS 판결의 평  
석",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7.
- 김찬규,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규정과 국내법정비" 「海洋  
政策動向」, 제18호, 1985.3.
- 문지혜, "국제법상 ITLOS의 지위와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덕영,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와 최근 동향". 해사법연구 제

- 20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08.
- 송영주,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韓國海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조기석방 재판관행과 담보금 산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명근, "국제해양법법원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 국제사법법원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하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7.
- 이병조, "UN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협약잠정초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 1993.
- \_\_\_\_\_ "UN 해양법협약 제15장과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국제사법재판소규정과 비교하여", 법학논문집 제10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 이운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韓國航海學會誌 제17권 제4호 別刷, 1993.
- \_\_\_\_\_ "해양환경오염의 국제적 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韓國海事法學會, 海法·通商法 제9권 제1호, 1997.
- 이외경, "국제해양법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12.
- 정갑용,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관례동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28호, 2003.

## II. 국외문헌

- Acevedo, Domingo E., Disputes under Consider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or Regional Bodi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a Crossroad, 1987.
- B. Boutros-Ghali, "The Arab League(1945-1970)", 25 Rev. Egypt Droit Int. 1967.
- Brown, L. N., and Jacobs, F. G.,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 Communities(2nd ed.,). London: 1983.
- C.M.H Waldock (ed), INTERNATIONAL DISPUTES : THE LEGAL ASPECTS, London, 1972.
- Cuyvers, Luc, Ocean Uses and Their Relation, New york: John Wily & Sons, 1984.
- E,A,Plunkett, "UN fact-finding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9 Va.J.I.L. 154(1968-5).
- Edmead, F., "Analysis and prediction in international mediation" in Raman, Disputes Settlement, p.221 at pp. 260-270.
- F.L.Kirgis, "NATO consultations as a component of national decision-making", 73 A. J. I. L. 1979.
- Francisco Ozanan Gomes Roch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iversity of Hamburg, 2001.
- Gudmindur Erikss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ar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 H. Burmester, "The Torres Strait Treaty: Ocean boundary delimitation by agreement", 1982.
- H. Caminos and M. R. Molitor, "Progressive developn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ackage deal" (1985) 79 A. J. I. L. 871.
- H.G. Darwin, 'Median and good offices' in Waldock,LEGAL ASPECTS. p83
- H,Fox "Conciliation" in C,M,H W (ed), INTERNATIONAL DISPUTES : The Legal Aspects, London, 1972.
- H. Jonsson, Friends in Conflict. London. 1982.
- Jennings, R & Watts, A., Oppenheim's International Law(9th ed), Vol. 1, London: Longman, 1992.
- J.G. Merrill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Manchrster, 1988.
- Joseph Akl, "the Seabed Disputes Chamber",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Law and Practice.

P.Salinger, AMERICA HELD HOSTAGE, London, 1982..

R.Hough, The FLEET THAT HAD TO DIE, London, 1975.

Rosenne, Shabtal,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2nd revised ed.),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T.O. Elias, "The 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59 A. J. I. L. 1965.

Treves, Tullio, New Trends i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 Bancaza Euromediterranean Courses of International Law, 1997.

UN, The Law of the Sea 'Current Development in State Praticce', New York:United Nation, 1987.

Yogesh K. Tyagi, "The System of Disputes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An Overview", The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No.2, 1985.

